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제2864호 2022. 9. 30.(금)

www.jeonbuk.go.kr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34호 접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35호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4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36호 2023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고시 38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38호 순창 풍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39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39호 순창 풍산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49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44호 2022년도 2차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고시 57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45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 고시 58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46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 고시(익산시) 59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47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 고시(익산시) 60
- 전라북도 고시 제2022-248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 고시(임실군) 61

입법예고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59호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459호 비영리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74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474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고창군선주협회) 75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478호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76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485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80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486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81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490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82
-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2-7호 재산등록사항 공개 83

시 군

- 군산시 고시 제2022-15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84
- 군산시 공고 제2022-1990호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17호)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85
- 군산시 공고 제2022-19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4호선 외 2개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 88
- 완주군 고시 제2022-76호 군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93
- 완주군 공고 제2022-1397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98

기 타

-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2-16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102
-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2-17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104
-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2-18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106
-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2-19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108
-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2-20호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10

발행 전 라 북 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고시 제2022-234호

접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군산시 대야면, 익산시 오산면 일원에 시행 예정인 접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9월 30일

1. 사업명 : 접산지구 배수개선사업
2. 위치 :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광교리,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일원
3. 사업목적 : 집중호우 시 신속한 농경지 침수방지로 ,영농환경 개선 및 농지이용률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 도모
4. 수혜면적 : 120.1ha
5. 사업개요 : 제수문 확장 1개소, 배수로 정비 4,794m, 복토 6.95ha 등
6.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7. 총사업비 : 9,814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전화 063-440-5716)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야면 광교리	7-54	구	539	174	익산시				
2	대야면 광교리	7-55	구	134	37	익산시				
4	오산면 신지리	822-25	구	215	48	익산시				
5	대야면 광교리	7-56	구	194	94	익산시				
6	대야면 광교리	7-57	구	370	111	익산시				
7	대야면 광교리	7-58	구	341	116	익산시				
8	대야면 광교리	7-59	구	351	99	익산시				
9	대야면 광교리	7-60	구	202	46	익산시				
10	대야면 광교리	7-61	구	148	28	익산시				
11	대야면 광교리	7-62	구	361	76	익산시				
12	대야면 광교리	7-63	구	376	107	익산시				
13	대야면 광교리	7-64	구	363	69	익산시				
14	대야면 광교리	7-65	구	381	80	익산시				
15	대야면 광교리	7-66	구	390	116	익산시				
18	오산면 신지리	823-5	구	77	17	익산시				
19	오산면 신지리	751-17	도	185	155	건설부				
20	오산면 신지리	663-28	잡	1,147	751	기획 재정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	오산면 신지리	638-21	도	3,481	3,466	익산시				
22	오산면 신지리	751-6	도	1,961	112	건설부				
23	오산면 신지리	751-19	도	73	65	건설부				
24	오산면 신지리	751-21	도	556	71	건설부				
25	오산면 신지리	639-5	답	4,289	4,289	기획 재정부				
26	오산면 신지리	639-10	구	396	91	기획 재정부				

전라북도 고시 제2022 - 235호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의4,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9월 30일

I. 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칭 :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 위치 :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
- 면적 : 2,977,810.8㎡
- 산업단지 외 사업 : 4,848㎡(마을진입로, 구거)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다가오는 서해안시대의 신산업입지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산업기능을 강화
- 전라북도 연담도시(전주-익산-군산-김제)T형 산업벨트 전략의 중심축 구축
- 생산·주거·업무기능 등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
-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시행자 : (기정) 지앤아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석중
(변경) 김제시장
- 주 소 : (기정)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백석로 368
(변경)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단지조성 : 2008 ~ 2016년 6월
(변경) 금회사업시행분 : 고시일로부터 ~ 2025년 12월
- 개발방법 : (기정) 민간개발
(변경)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 주요 유치업종(변경)

구분	유치업종	비고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제조업 (1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16)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1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 광물제조업 (23) ◦ 1차금속제조업 (24) ◦ 금속가공 (25)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26) ◦ 전기장비 (28) ◦ 기타기계 및 장비 (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 연구시설(70)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제조업 (1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1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 광물제조업 (23) ◦ 1차금속제조업 (24) ◦ 금속가공 (25)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26) ◦ 전기장비 (28) ◦ 기타기계 및 장비 (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 출판업(58)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 우편 및 통신업(61) ◦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리업 등 서비스업(62) ◦ 정보 서비스업(63) ◦ 연구시설(70) ◦ 전문 서비스업(71)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 임대업: 부동산 제외(76) ◦ 교육 서비스업(85) 	한국표준 산업분류 10차개정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934,333.6	1,950,110.9	100.0	100.0	
식료품 제조업(10)	211,601.8	211,601.8	11.0	10.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5,420.2	5,420.2	0.3	0.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13,298.0	13,298.0	0.7	0.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1,662.2	1,662.2	0.1	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19)	6,612.0	6,612.0	0.3	0.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11,568.0	11,568.0	0.6	0.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22)	32,564.3	32,564.3	1.7	1.7	
비금속 광물(23)	29,760.1	29,760.1	1.5	1.5	
1차금속(24)	96,767.1	96,767.1	5.0	5.0	
금속가공 (25)	114,926.9	114,926.9	5.9	5.9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26)	9,957.4	9,957.4	0.5	0.5	
전기장비 (28)	31,590.8	31,590.8	1.6	1.6	
기타기계 및 장비 (29)	390,287.7	390,287.7	20.2	2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871,565.8	871,565.8	45.1	44.7	
기타운송장비 제조업(31)	6,607.1	6,607.1	0.3	0.3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52)	53,102.5	53,102.5	2.8	2.7	
연구시설(70)	42,976.6	42,976.6	2.2	2.2	
사업지원서비스업(75)	4,065.1	4,065.1	0.2	0.2	
식료품 제조업(1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비금속 광물(2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26),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연구시설(70), 사업지원 서비스업(75) /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우편 및 통신업(61), 컴퓨터 프로그래밍·관리업 등 서비스업(62), 정보 서비스업(63), 전문 서비스업(7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임대업(부동산 제외)(76), 교육 서비스업(85)	-	15,777.3	-	0.8	복합용지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면적	비율(%)	기정	변경	
합 계	2,977,810.8	2,977,810.8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1,934,333.6	1,934,333.6			65.0	65.0	
복합용지	-	15,777.3	증)15,777.3	증)100.0	-	0.5	
주거시설용지	73,412.5	57,635.2	감)15,777.3	감)21.5	2.5	2.0	
공동주택	63,338.2	47,560.9	감)15,777.3		2.1	1.6	
단독주택	10,074.3	10,074.3			0.3	0.4	
상업시설용지	93,323.1	93,323.1			3.1	3.1	
공공시설용지	861,275.8	861,275.8			28.9	28.9	
도로	515,385.9	515,385.9			17.3	17.3	
주차장	20,474.3	20,474.3			0.7	0.7	
공급처리시설	53,840.5	53,840.5			1.8	1.8	
폐기물처리시설	48,607.9	48,607.9			1.6	1.6	
변전소	2,734.6	2,734.6			0.1	0.1	
중계펌프장시설	2,498.0	2,498.0			0.1	0.1	
저류시설	38,858.9	38,858.9			1.3	1.3	
녹지용지	232,716.2	232,716.2			7.8	7.8	
공원	140,116.8	140,116.8			4.7	4.7	
연결녹지	4,587.8	4,587.8			0.2	0.2	
경관녹지	16,929.3	16,929.3			0.6	0.6	
완충녹지	69,891.8	69,891.8			2.3	2.3	
공공공지	1,190.5	1,190.5			0.1	0.1	
지원시설용지	15,465.8	15,465.8			0.5	0.5	
공공지원시설	14,474.7	14,474.7			0.5	0.5	
종교시설	991.1	991.1			0.1	0.1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변경없음)

구분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59	23,824	515,385.9	19	9,883	203,301	24	6,231	141,240.6	16	7,710	170,844.3
	대로	5	6,538	207,646.3	1	408	14,655.3	1	1,651	71,941.2	3	4,479	121,049.8
	중로	40	13,909	264,387.5	13	6,829	151,786.9	17	3,994	63,601.3	10	3,086	48,999.3
	소로	14	3,377	43,352.1	5	2,646	36,858.8	6	586	5,698.1	3	145	795.2

○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	개소	비고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20,474.3	9	

2)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공 원	계	140,116.8	10	
		소 공 원	26,400.7	7	
		근린공원	113,716.1	3	

○ 녹지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녹 지	계	91,408.9	14	
		완충녹지	69,891.8	8	
		연결녹지	4,587.8	3	
		경관녹지	16,929.3	3	

○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	1,190.5	1	

3) 유통·공급시설계획(변경)

○ 용수공급계획(변경)

구 분		계획급수량(m ³ /일)	공 급 계 획	비고
기정	총용수량	12,698.2		
	공업용수	9,334.9	○ 금강 광역상수도를 통해 공급	
	생활용수	3,363.3	○ 진주권 광역상수도를 통해 공급	
변경	총용수량	12,079.4		
	공업용수	9,334.9	○ 금강 광역상수도를 통해 공급	
	생활용수	2,744.5	○ 진주권 광역상수도를 통해 공급	

○ 오·폐수처리계획(변경)

구 분		계획오수량 (m ³ /일)	처 리 계 획	비고
기정	계	6,381.5	○ 산업단지 내 중계펌프장을 통해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공업폐수	3,784		
	생활오수	2,597.5		
변경	계	5,903.4	○ 산업단지 내 중계펌프장을 통해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공업폐수	3,784		
	생활오수	2,119.4		

○ 에너지공급계획(변경)

구분		수요량	공 급 계 획	비고
기정	전력공급	산업시설용지	109,593kW	○ 산업단지 내 변전소에서 전력공급
		지원시설용지	30,466kW	
	열 공 급	산업시설용지	1,014,522Gcal/년	○ 전북도시가스(주)에서 공급
		지원시설용지	38,861Gcal/년	
변경	전력공급	산업시설용지	109,593kW	○ 산업단지 내 변전소에서 전력공급
		지원시설용지	31,639kW	
	열 공 급	산업시설용지	1,014,522Gcal/년	○ 전북도시가스(주)에서 공급
		지원시설용지	39,396Gcal/년	

○ 통신공급계획(변경)

구분		통신수요량(회선)	공 급 계 획	비고
기정	통신공급	5,506	○ 단지내 ONU(초고속망공급장치 기계실)를 설치하여 공급예정	
변경	통신공급	4,652	○ 단지내 ONU(초고속망공급장치 기계실)를 설치하여 공급예정	

○ 폐기물처리계획(변경)

구분		폐기물처리량 (ton/일)	처 리 계 획	비고
기정	합계	79.5	○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55.3ton/일)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하고, 지정폐기물(10.9ton/일)과 생활폐기물(24.3ton/일)은 외부 위탁처리	
	생활 폐기물	24.2		
	사업장 폐기물	55.3		
변경	합계	78.6	○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55.3ton/일)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하고, 지정폐기물(10.9ton/일)과 생활폐기물(24.3ton/일)은 외부 위탁처리	
	생활 폐기물	23.3		
	사업장 폐기물	55.3		

○ 전기공급설비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2,734.6	1	

4)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없음)

○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공공청사	공공청사	14,474.7	2	

5)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 우수지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유수지	저류시설	38,858.9	1	

6)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폐기물처리시설	일반폐기물처리시설	48,607.9	1	

○ 하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개소	비고
기정	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2,498	1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변경없음)

(단위 : 억원)

구분	구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기정	계	2,997	100.0	
	용 지 비	1,080	36.0	• 토지·지장물·간접보상, 부대비 등
	조 성 비	1,449	48.3	• 용역비, 단지조성비 등
	기타비용	468	15.7	• 각종부담금, 직접인건비, 관리비, 금융비용 등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비고
기정	자체자금	2,997	10	28	614	916	859	318	252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해당없음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령 제27조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기반시설

- 산업단지 진입도로

- 위 치 : 김제시 백산면 지방도 702호(백산교차로~내죽교차로)
- 사업내용 : L=4.93km, B=20m, 차로수 : 4차선
- 사업기간 : 2010~2012년(3년)

- 용수공급시설

- 공업용수 : 송수관로(L=15.57km, D=600mm), 배수관로(L=2.62km, D=500mm)
- 생활용수 : L=2.63km, D=350mm
- 사업기간 : 산업단지 조성시기와 병행(2009.~2018년)

- 폐수종말처리시설

- 위 치 : 백산면 부거리 일원
- 사업내용 : 오수관로(L=2.9km), 중계펌프장(오수발생량 : 6,469.3m³/일)
- 사업기간 : 2009~2012년(2년)

10. 관련도서 열람 방법

- 관련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김제시청(공영개발과 ☎ 063-540-617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II. 실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변경)

- 시행자 : (기정) 지앤아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석중
(변경) 김제시장
- 주 소 : (기정)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백석로 368
(변경)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다가오는 서해안시대의 신산업입지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산업기능을 강화
 - 전라북도 연담도시(전주-익산-군산-김제)T형 산업벨트 전략의 중심축 구축
 - 생산·주거·업무기능 등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
 -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
- 사업의 개요(변경)
 - 사업규모(변경없음) : 2,977,810.8㎡
 - 유치업종(변경)

구분	유치업종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제조업 (1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16)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1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 광물제조업 (23) ○ 1차금속제조업 (24) ○ 금속가공 (25)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26) ○ 전기장비 (28) ○ 기타기계 및 장비 (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 연구시설(70)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제조업 (1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16)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1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 광물제조업 (23) ○ 1차금속제조업 (24) ○ 금속가공 (25)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26) ○ 전기장비 (28) ○ 기타기계 및 장비 (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 출판업(58)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 우편 및 통신업(61) ○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리업 등 서비스업(62) ○ 정보 서비스업(63) ○ 연구시설(70) ○ 전문 서비스업(71)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 임대업: 부동산 제외(76) ○ 교육 서비스업(85)

- 법적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
- 면적 : 2,997,810.8㎡
- 산업단지 외 사업 : 4,848㎡(마을진입로, 구거)

5. 사업시행 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시행방법 : (기정) 민간개발
(변경) 공영개발
- 시행기간 : (기정) 단지조성 : 2008 ~ 2016년 6월
(변경) 금회사업시행분 : 고시일로부터 ~ 2025년 12월(지식산업센터 건립)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6-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면적	비율(%)	기정	변경	
합 계	2,977,810.8	2,977,810.8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1,934,333.6	1,934,333.6			65.0	65.0	
복합용지	-	15,777.3	증)15,777.3	증)100.0	-	0.5	
주거시설용지	73,412.5	57,635.2	감)15,777.3	감)21.5	2.5	2.0	
공동주택	63,338.2	47,560.9	감)15,777.3		2.1	1.6	
단독주택	10,074.3	10,074.3			0.3	0.4	
상업시설용지	93,323.1	93,323.1			3.1	3.1	
공공시설용지	861,275.8	861,275.8			28.9	28.9	
도로	515,385.9	515,385.9			17.3	17.3	
주차장	20,474.3	20,474.3			0.7	0.7	
공급처리시설	53,840.5	53,840.5			1.8	1.8	
폐기물처리시설	48,607.9	48,607.9			1.6	1.6	
변전소	2,734.6	2,734.6			0.1	0.1	
중계펌프장시설	2,498.0	2,498.0			0.1	0.1	
저류시설	38,858.9	38,858.9			1.3	1.3	
녹지용지	232,716.2	232,716.2			7.8	7.8	
공원	140,116.8	140,116.8			4.7	4.7	
연결녹지	4,587.8	4,587.8			0.2	0.2	
경관녹지	16,929.3	16,929.3			0.6	0.6	
완충녹지	69,891.8	69,891.8			2.3	2.3	
공공공지	1,190.5	1,190.5			0.1	0.1	
지원시설용지	15,465.8	15,465.8			0.5	0.5	
공공지원시설	14,474.7	14,474.7			0.5	0.5	
종교시설	991.1	991.1			0.1	0.1	

6-2.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977,810.8	2,977,810.8	100.0	100.0	
제1종전용주거지역	28,598.3	28,598.3	1.0	1.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3,097.1	74,993.0	3.4	2.5	
준주거지역	-	28,104.1	-	0.9	
일반상업지역	170,167.0	170,167.0	5.7	5.7	
일반공업지역	2,558,310.3	2,558,310.3	85.9	85.9	
자연녹지지역	117,638.1	117,638.1	4.0	4.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	합 계	2,977,810.8	2,977,810.8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용도 지역변경
	제1종전용주거지역	28,598.3	28,598.3	
	제2종일반주거지역	103,097.1	74,993.0	
	준주거지역	-	28,104.1	
	일반상업지역	170,167.0	170,167.0	
	일반공업지역	2,558,310.3	2,558,310.3	
	자연녹지지역	117,638.1	117,638.1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김제시 백산면 일원	2,997,810.8	-	2,997,810.8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조서(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기정	합계	59	23,824	515,385.9	19	9,883	203,301	24	6,231	141,240.6	16	7,710	170,844.3
	대로	5	6,538	207,646.3	1	408	14,655.3	1	1,651	71,941.2	3	4,479	121,049.8
	중로	40	13,909	264,387.5	13	6,829	151,786.9	17	3,994	63,601.3	10	3,086	48,999.3
	소로	14	3,377	43,352.1	5	2,646	36,858.8	6	586	5,698.1	3	145	795.2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42	주간선	408	소로 1-1 부거리 1623도	소로 3-1 부거리 1623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대로	2	1	31.75	주간선	1,651	중로 2-1 부거리 1618도	중로 1-13 부거리 1552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대로	3	1	26	주간선	2,460	소로 1-5 부거리 1638도	대로 2-1 부거리 1553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대로	3	2	29	보조 간선	1,135	중로 1-9 부거리 1633도	대로 3-3 부거리 1633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대로	3	3	25	보조 간선	884	대로 3-1 부거리 1555도	중로 1-15 부거리 1555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150	중로 2-2 부거리 1624도	대로 1-1 부거리 1624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중로	1	2	20	집산 도로	948	대로 1-1 부거리 1622도	대로 3-1 부거리 1622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	20	집산 도로	307	대로 3-2 부거리 1632도	중로 1-6 부거리 1632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중로	1	6	20	집산 도로	1,294	중로 1-9 부거리 1631도	대로 3-3 부거리 1629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중로	1	7	20	집산 도로	943	중로 1-9 부거리 1637도	중로 3-6 부거리 1637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중로	1	8	20	집산 도로	205	중로 1-7 부거리 1637도	대로 3-2 부거리 1637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중로	1	9	20	집산 도로	209	중로 1-7 부거리 1637도	대로 3-2 부거리 1637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중로	1	10	20	집산 도로	652	대로 3-3 부거리 1554도	중로 3-1 부거리 1554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중로	1	11	20	집산 도로	346	대로 3-1 부거리 1554도	중로 1-10 부거리 1554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중로	1	12	20	집산 도로	403	중로 1-10 부거리 1554도	중로 1-13 부거리 1554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중로	1	13	20	집산 도로	1,330	대로 2-1 부거리 1606도	중로 3-8 부거리 1556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중로	1	14	20	국지 도로	19	부거리 1606도	부거리 1606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중로	1	15	23	집산 도로	23	부거리 1606도	부거리 1606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중로	1	16	20	집산 도로	756	소로 1-3 부거리 1638도	소로 3-7 부거리 1638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385	소로 1-1 부거리 1625도	대로 2-1 부거리 1625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중로	2	2	16.5	집산 도로	136	소로 2-1 부거리 1626도	중로 2-1 부거리 1626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중로	2	4	15	집산 도로	213	중로 2-1 부거리 1624도	중로 1-1 부거리 1624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중로	2	6	15	집산 도로	360	중로 1-2 부거리 1621도	중로 2-10 부거리 1621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중로	2	7	15	집산 도로	53	중로 2-8 부거리 1620도	대로 2-1 부거리 1620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중로	2	8	15	집산 도로	134	중로 1-2 부거리 1620도	중로 2-7 부거리 1620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9	15	집산 도로	120	중로 1-2 부거리 1619도	중로 2-6 부거리 1619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중로	2	10	15	집산 도로	176	중로 1-2 부거리 1619도	대로 2-1 부거리 1619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중로	2	11	15	집산 도로	153	중로 2-14 부거리 1630도	중로 1-2 부거리 1630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중로	2	12	15	집산 도로	150	중로 2-14 부거리 1630도	중로 1-2 부거리 1630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중로	2	13	15	집산 도로	150	중로 2-14 부거리 1630도	중로 1-2 부거리 1630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중로	2	14	15	집산 도로	480	대로 1-1 부거리 1630도	중로 1-2 부거리 1630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중로	2	15	15	집산 도로	789	중로 1-5 부거리 1629도	중로 1-6 부거리 1629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중로	2	16	15	집산 도로	155	중로 1-6 부거리 1631도	중로 2-14 부거리 1631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중로	2	17	15	집산 도로	243	부거리 1638도	중로 1-9 부거리 1637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중로	2	18	15	집산 도로	205	중로 1-7 부거리 1637도	대로 3-2 부거리 1637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2010.12.17)	
기정	중로	2	19	15	국지 도로	44	부거리 1606도	부거리 1606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중로	3	1	14.5	집산 도로	502	대로 3-1 부거리 1553도	중로 1-13 부거리 1606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48	부거리 1606도	부거리 1606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중로	3	4	14.5	집산 도로	210	중로 3-6 부거리 1635도	대로 3-3 부거리 1635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중로	3	5	14.5	집산 도로	154	중로 1-16 부거리 1635도	중로 3-6 부거리 1635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중로	3	6	14.5	집산 도로	757	대로 3-1 부거리 1635도	중로 3-7 부거리 1635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중로	3	7	14.5	집산 도로	400	중로 1-16 부거리 1638도	대로 3-3 부거리 1557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중로	3	8	14.5	집산 도로	243	중로 1-16 부거리 1556도	중로 1-13 부거리 1638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9	12	집산 도로	16	부거리 1606도	부거리 1606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중로	3	10	12	집산 도로	92	중로 2-1 부거리 1624도	중로 1-1 부거리 1624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340	소로 2-1 부거리 1625도	대로 1-1 부거리 1625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소로	1	2	10	집산 도로	2,090	부거리 1640도	중로 3-8 부거리 1638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소로	1	3	10	집산 도로	181	소로 1-2 부거리 1639도	대로 3-1 부거리 1639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소로	1	4	10	집산 도로	10	부거리 1606도	부거리 1606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소로	1	5	11	국지 도로	25	부거리 1640도	부거리 1640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소로	2	1	9	집산 도로	111	소로 1-1 부거리 1626도	중로 2-2 부거리 1626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소로	2	2	9	집산 도로	97	소로 2-1 부거리 1627도	소로 2-5 부거리 1627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소로	2	3	9	집산 도로	81	소로 2-6 부거리 1628도	소로 2-2 부거리 1628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소로	2	4	9	집산 도로	81	소로 2-6 부거리 1627도	소로 2-2 부거리 1627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소로	2	5	9	집산 도로	116	소로 2-6 부거리 1627도	중로 2-2 부거리 1627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소로	2	6	9	집산 도로	100	소로 2-3 부거리 1628도	중로 2-1 부거리 1628도	일반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소로	3	1	6	특수 도로	35	대로 1-1 부거리 1586-3도	중로 2-6 부거리 1586-3도	보행자 전용 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소로	3	2	6	특수 도로	43	중로 2-4 부거리 1597-6공	대로 1-1 부거리 1597-6공	보행자 전용 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소로	3	3	4	특수 도로	23	소로 2-5 부거리 1600-2도	중로 2-2 부거리 1600-2도	보행자 전용 도로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474.3	-	20,474.3		
기정	주1	주차장	부거리 1599-4차	1,199.6	-	1,199.6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주2	주차장	부거리 1589차	1,588.5	-	1,588.5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주3	주차장	부거리 1592-5차	2,075.2	-	2,075.2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주4	주차장	부거리 1573-1차	5,450.6	-	5,450.6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주5	주차장	부거리 1582-2차	3,232.7	-	3,232.7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주6	주차장	부거리 1578-1차	2,083.6	-	2,083.6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주7	주차장	부거리 1548-2차	2,438.8	-	2,438.8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주8	주차장	부거리 1558-8장 일원	1,050.6	-	1,050.6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주9	주차장	부거리 1583-5차	1,354.7	-	1,354.7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변경없음)

▪ 공원 총괄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0	140,116.8	-	10	140,116.8	
기정	공원	소공원	7	26,400.7	-	7	26,400.7	
기정	공원	그린공원	3	113,716.1	-	3	113,716.1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0,116.8	-	140,116.8		
소 계					26,400.7	-	26,400.7		
기정	소1	1호 소공원	소공원	부거리 1589-1공	1,297.6	-	1,297.6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소2	2호 소공원	소공원	부거리 1599-5공	1,674.9	-	1,674.9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소3	3호 소공원	소공원	부거리 1604-10공	1,609.9	-	1,609.9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소4	4호 소공원	소공원	부거리 1577-2공	10,021.9	-	10,021.9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소5	5호 소공원	소공원	부거리 1591-4공	2,191.6	-	2,191.6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소6	6호 소공원	소공원	부거리 1570공	7,620.8	-	7,620.8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소7	7호 소공원	소공원	부거리 1548-1공	1,984.0	-	1,984.0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소 계					113,716.1	-	113,716.1		
기정	근1	1호 근린공원	근린 공원	부거리 1578공	81,237.1	-	81,237.1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근2	2호 근린공원	근린 공원	부거리 1572-2공 일원	19,306.8	-	19,306.8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근3	3호 근린공원	근린 공원	부거리 1558-8장 일원	13,172.2	-	13,172.2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2) 녹지(변경없음)

▪ 녹지 총괄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4	91,408.9	-	14	91,408.9	
기정	녹지	완충녹지	8	69,891.8	-	8	69,891.8	
기정	녹지	연결녹지	3	4,587.8	-	3	4,587.8	
기정	녹지	경관녹지	3	16,929.3	-	3	16,929.3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1,408.9	-	91,408.9		
소 계					69,891.8	-	69,891.8		
기정	완1	녹지	완충 녹지	부거리 1581-1공 일원	11,330.7	-	11,330.7	전라북도고시 제2009-119호 (2009.4.26)	
기정	완2	녹지	완충 녹지	부거리 1596-1공	10,193.9	-	10,193.9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완3	녹지	완충 녹지	부거리 1574-1공 일원	3,342.8	-	3,342.8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완4	녹지	완충 녹지	백산면 부거리 1659공 일원	14,800.1	-	14,800.1	전라북도고시 제2013-37호 (2013.2.15)	
기정	완5	녹지	완충 녹지	부거리 1583-1공	1,808.7	-	1,808.7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완6	녹지	완충 녹지	부거리 1559-1공 일원	10,245.4	-	10,245.4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완8	녹지	완충 녹지	부거리 1571-2공 일원	13,366.7	-	13,366.7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완9	녹지	완충 녹지	백산면 부거리 1551-1공 일원	4,803.5	-	4,803.5	전라북도고시 제2013-245호 (2013.10.18)	
소 계					4,587.8	-	4,587.8		
기정	연1	녹지	연결 녹지	부거리 1601-6대	929.5	-	929.5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연2	녹지	연결 녹지	부거리 1600-7공 일원	1,186.1	-	1,186.1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연3	녹지	연결 녹지	부거리 1588-1공 일원	2,472.2	-	2,472.2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소 계					16,929.3	-	16,929.3		
기정	경1	녹지	경관 녹지	부거리 1612공 일원	4,695.1	-	4,695.1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경2	녹지	경관 녹지	부거리 1563공 일원	8,827.3	-	8,827.3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경3	녹지	경관 녹지	부거리 1570-27장	3,406.9	-	3,406.9	전라북도고시 제2019-327호 (2019.12.27)	

(3)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90.5	-	1,190.5		
기정	지1	공공 공지	공공 공지	부거리 1598-1공 일원	1,190.5	-	1,190.5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 유통·공급시설(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734.6	-	2,734.6		
기정	번1	전기공급 설비	변전소	부거리 1583-4잡	2,734.6	-	2,734.6	전라북도 고시 제2009-119호 (2009.4.26)	

○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474.7	-	14,474.7		
기정	공1	공공청사	공공청사	부거리 1597-10대	2,063.4	-	2,063.4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기정	공2	공공청사	공공청사	부거리 1575대	12,411.3	-	12,411.3	전라북도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 방재시설(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858.9	-	38,858.9		
기정	저1	유수지	저류시설	부거리 1583-2유	38,858.9	-	38,858.9	전라북도 고시 제2009-119호 (2009.4.26)	

○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8,607.9	-	48,607.9		
기정	폐1	폐기물처리 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부거리 1559잡	48,607.9	-	48,607.9	전라북도 고시 제2009-119호 (2009.4.26)	

2) 하수처리시설(변경없음)

▪ 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98	-	2,498		
기정	펌1	하수처리 시설	중계펌프장	부거리 1583-3잡	2,498.0	-	2,498.0	전라북도 고시 제2010-337호 (2010.12.17)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비 고
산업1	산업1	37,162.6	가구내 획지는 분할 및 합병가능
산업2	산업2	16,622.4	
산업3	산업3	50,498.9	
산업4	산업4	131,009.7	
산업5	산업5	116,974.4	
산업6	산업6	93,747.2	
산업7	산업7	51,680.8	
산업8	산업8	82,211.0	
산업9	산업9	58,224.1	
산업10	산업10	75,025.4	
산업11	산업11	53,114.0	
산업12	산업12	102,691.2	
산업13	산업13	78,664.7	
산업14	산업14	46,539.1	
산업15	산업15	40,929.8	
산업16	산업16	75,271.8	
산업17	산업17	64,138.6	
산업18	산업18	135,645.4	
산업19	산업19	23,131.5	
산업20	산업20	57,801.8	
산업21	산업21	61,203.0	
산업22	산업22	43,590.1	
산업23	산업23	86,486.4	
산업24	산업24	123,452.9	
산업25	산업25	56,877.1	
산업26	산업26	42,710.4	
산업27	산업27	76,484.5	
산업28	산업28	52,444.8	

○ 복합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동2	복합1	공동2	복합1	15,777.3	15,777.3	-1	-1	15,777.3	15,777.3	

○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상업1	상업1	8,214.4	-1	443.5	
			-2	474.2	
			-3	448.9	
			-4	1,822.4	
			-5	1,821.7	
			-6	1,824.1	
			-7	446.6	
			-8	477.7	
			-9	455.3	
상업2	상업2	3,603.8	-1	2,035.0	
			-2	770.9	
			-3	797.9	
상업3	상업3	5,275.0	-1	672.3	
			-2	629.9	
			-3	629.7	
			-4	616.3	
			-5	582.0	
			-6	581.2	
			-7	611.6	
			-8	952.0	
상업4	상업4	5,224.7	-1	640.4	
			-2	664.6	
			-3	665.0	
			-4	664.6	
			-5	664.4	
			-6	664.8	
			-7	664.6	
			-8	596.3	
상업5	상업5	11,462.5	-1	3,542.1	
			-2	939.1	
			-3	1,070.7	
			-4	1,228.7	
			-5	598.4	
			-6	594.2	
			-7	559.8	
			-8	990.1	
			-9	969.7	
			-10	969.7	
상업6	상업6	6,664.7	-1	526.3	
			-2	568.0	
			-3	564.9	
			-4	549.0	
			-5	568.0	
			-6	545.5	
			-7	548.6	
			-8	571.1	
			-9	552.1	
			-10	568.7	
			-11	571.7	
			-12	530.8	
상업7	상업7	9,021.2	-1	743.5	
			-2	752.5	
			-3	752.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4	664.5	
			-5	660.8	
			-6	603.8	
			-7	642.8	
			-8	608.7	
			-9	664.1	
			-10	668.1	
			-11	756.5	
			-12	756.6	
			-13	746.8	
상업8	상업8	8,493.5	-1	610.1	
			-2	803.5	
			-3	803.3	
			-4	803.1	
			-5	590.2	
			-6	628.7	
			-7	592.6	
			-8	804.2	
			-9	804.6	
			-10	804.8	
			-11	571.9	
			-12	676.5	
상업9	상업9	7,124.5	-1	753.4	
			-2	555.2	
			-3	555.2	
			-4	555.2	
			-5	547.8	
			-6	674.7	
			-7	674.7	
			-8	547.6	
			-9	554.9	
			-10	554.8	
			-11	554.8	
			-12	596.2	
상업10	상업10	2,959.2	-1	477.7	
			-2	559.8	
			-3	555.2	
			-4	411.7	
			-5	477.5	
			-6	477.3	
상업11	상업11	4,693.7	-1	684.7	
			-2	550.0	
			-3	550.0	
			-4	550.0	
			-5	550.0	
			-6	550.0	
			-7	550.0	
			-8	709.0	
상업12	상업12	3,830.6	-1	514.7	
			-2	550.6	
			-3	550.3	
			-4	550.4	
			-5	550.1	
			-6	550.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7	564.3	
상업13	상업13	2,226.7	-1	2,226.7	
상업14	상업14	1,388.5	-1	467.4	
			-2	470.2	
			-3	450.9	
상업15	상업15	7,810.0	-1	906.6	
			-2	905.8	
			-3	906.0	
			-4	906.0	
			-5	904.5	
			-6	1,585.9	
			-7	860.4	
상업16	상업16	4,352.7	-8	834.8	
			-1	709.8	
			-2	723.1	
			-3	723.7	
			-4	722.9	
상업17	상업17	977.4	-5	720.4	
			-6	752.8	
			-1	977.4	

* 가구내 획지는 분할 및 합병가능

○ 주거용지(변경)

1)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동1	공동1	공동1	28,760.5	28,760.5	-1	-1	13,501.1	13,501.1	가구내 획지는 분할 및 합병가능
					-2	-2	15,259.4	15,259.4	
공동2	공동2	공동2	34,577.7	18,800.4	-1	-	15,777.3	-	
					-2	-1	18,800.4	18,800.4	

2)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단독1	단독1	1,162.8	-1	235.7	
			-2	235.5	
			-3	235.5	
			-4	235.3	
			-5	220.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단독2	단독2	2,209.9	-1	199.5	
			-2	216.4	
			-3	216.3	
			-4	216.2	
			-5	209.9	
			-6	199.3	
			-7	216.5	
			-8	216.6	
			-9	216.6	
			-10	302.6	
단독3	단독3	2,085.8	-1	331.0	
			-2	237.3	
			-3	237.2	
			-4	237.5	
			-5	330.4	
			-6	237.4	
			-7	237.4	
			-8	237.6	
단독4	단독4	1,850.9	-1	264.7	
			-2	264.6	
			-3	264.6	
			-4	264.7	
			-5	264.7	
			-6	264.5	
			-7	263.1	
단독5	단독5	1,229.1	-1	264.8	
			-2	264.1	
			-3	264.3	
			-4	264.6	
			-5	171.3	
단독6	단독6	1,535.8	-1	264.6	
			-2	264.7	
			-3	264.5	
			-4	247.3	
			-5	247.1	
			-6	247.6	

* 가구내 획지는 분할 및 합병가능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1) 주차장(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주1	주1	1,199.6	부거리 1599-4차	1,199.6	
주2	주2	1,588.5	부거리 1589차	1,588.5	
주3	주3	2,075.2	부거리 1592-5차	2,075.2	
주4	주4	5,450.6	부거리 1573-1차	5,450.6	
주5	주5	3,232.7	부거리 1582-2차	3,232.7	
주6	주6	2,083.6	부거리 1578-1차	2,083.6	
주7	주7	2,438.8	부거리 1548-2차	2,438.8	
주8	주8	1,050.6	부거리 1558-8장 일원	1,050.6	
주9	주9	1,354.7	부거리 1583-5차	1,354.7	

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변1	변1	2,734.6	부거리 1583-4잡	2,734.6	

3)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공1	공1	2,063.4	부거리 1597-10대	2,063.4	
공2	공2	12,411.3	부거리 1575대	12,411.3	

4)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폐1	폐1	48,607.9	부거리 1559잡	48,607.9	

5) 하수처리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펌1	펌1	2,498.0	부거리 1583-3잡	2,498.0	

6) 기타시설 -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총1	총1	991.1	부거리 1599-3종	991.1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28	산업1 ~ 산업28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 복합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동 2-1	복합 1-1	공동 2-1	복합 1-1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의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 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① 산업시설(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설치 및 제한 업종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 ·입주허용업종 : 식료품 제조업(C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비금속 광물(C2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출판업(J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우편 및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M74), 임대업(부동산 제외)(M76), 사업 지원 서비스업(N75), 교육 서비스업(M85) ② 산업시설 외의 시설(다음 각호에 한하며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설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지정 악취물질 배출업체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되는 업체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은 지형여건, 생산설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건축선	-
				형 태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 옥상조경을 권장함

○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1 ~ 상업17	상업1 ~ 상업17	용 도	○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 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 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면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 20m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c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형 태 및 외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지붕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옥상에는 옥상정원 조성을 권장한다.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경우는 가능하다.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을 준용한다.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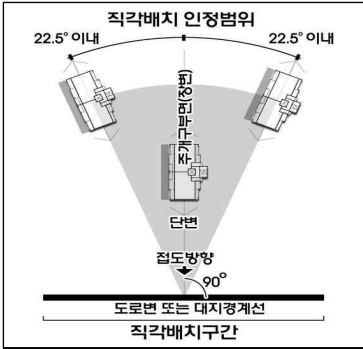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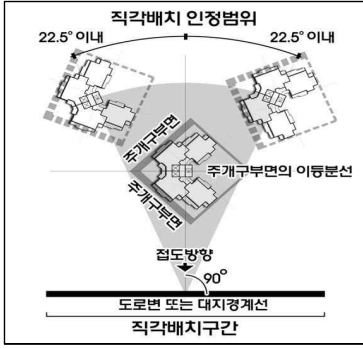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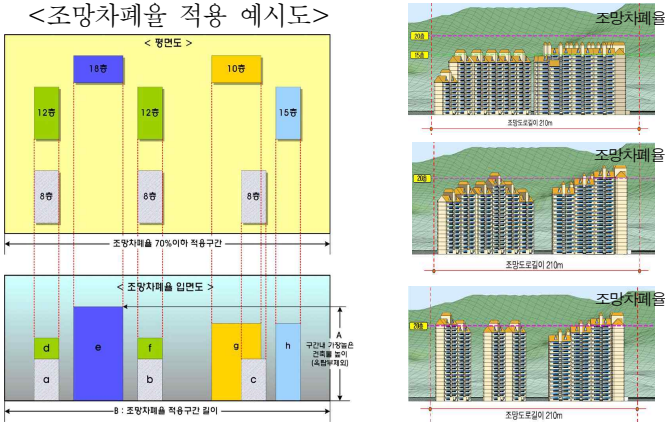
(별표1) 상업용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C1	C2	C3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정비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정비공장 - 단독주택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허용 용도			
건폐율		80%	80%	70%
용적률		1,300%	1,300%	350%
건축선		2m 건축한계선 : 대로1-1호선, 대로2-1호선, 중로2-14호선, 소로1-1호선 변 상업용지		
높이	최고 층수	18층	18층	5층
	최저 층수	-	-	-
해당 블록		상업6, 상업8~9	상업1~5, 상업7, 상업10~15	상업16~17

2)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1 ~ 공동2	공동1 ~ 공동2	용 도	○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 기준을 따르며,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 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배 치 및 건축선	<p>○ 직각배치구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직각배치구간에는 건축물을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30°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30°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p><판상형(타원형) 예시도></p>  <p><탑상형 예시도></p>  <p>○ 조망차폐율 적용구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망차폐율은 주요 조망축 방향에서 수직으로 투영된 건축물의 입면적 합계를 주요 조망축 방향이 지정된 단지의 조망면적으로 나눈 것으로서 조망차폐율 적용구간은 조망차폐율이 70%이하가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 A : 조망차폐율 적용구간내 가장 높은 건축물높이(옥탑부 제외) B : 조망차폐율 적용구간 길이 - 산정방식:조망차폐율=(주동의 투영입면적÷조망면적)×100 - 적용예시(산식):{(a+b+c+d+e+f+g+h)÷(A×B)}×100 ≤ 70% <p><조망차폐율 적용 예시도></p>  <p>○ 6m 건축한계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1-1호선, 대로2-1호선, 중로1-1호선, 중로2-1호선, 중로2-2호선 변 공동주택용지. 단, 주거동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인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동 길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호 이하로 하되 탐상형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단 판상형이 전용면적 50㎡ 이하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는 10호 이하로 할 수 있다.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및 부대부리시설의 지붕형태는 통일감 있게 배치하고,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입면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동은 최상층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이내), 기준층부(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이내)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주거동 입면변화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최상층부</th> <th>기준층부</th> <th>지상층부</th> </tr> </thead> <tbody> <tr> <td>13층이상</td> <td>최상층에서부터 2개층</td> <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td> </tr> <tr> <td>13층~9층</td> <td>최상층</td> <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td> </tr> <tr> <td>8층이하</td> <td>최상층부 구분 없음</td> <td>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16층 이상일 경우 입면구분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 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담장의 재료와 형태를 통일시키도록 한다. -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담장으로써 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 이하로 한다. 	구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3층이상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3층~9층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8층이하	최상층부 구분 없음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
구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3층이상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3층~9층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8층이하	최상층부 구분 없음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은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적합한高明도, 저채도의 색상으로 하되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고 순도 높은 색의 사용을 금지한다.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으로 설정하고 2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여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나, 건물의 활력과 상징적 효과를 위해 저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 시각적 초점이 될 수 있는 아파트의 측면에 김제시의 정체성과 단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처리를 권장한다. 																

(별표2)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공동 A1	공동 A2
		허용용도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 블록	공동1-1	공동1-2, 공동2-1, 공동2-2	
변경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공동 1	공동 2
		허용용도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 블록	공동1-1, 공동1-2	공동2-1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 단독6 (단독 3-1,3-5 제외)	단독1 ~ 단독6 (단독 3-1,3-5 제외)	용 도	○ 허용용도 - 단독주택(4층이하, 다가구주택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용적률	○ 100%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및 외 관	○ 지붕형태 - 전면 경사지붕(지붕구배는 3/10이상, 7/10이하)권장 • 옥상조경 및 녹화율 50%이상시 경사지붕을 설치한 것으로 함 (단, 옥상녹화시 관리를 위한 수관시설 필수) ○ 담장 및 대문 - 단독주택용지 내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 - 단독주택용지 내 대문은 투시형, 담장은 생울타리형으로 설치권장 ○ 건축물 외벽재료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컨테이너, 조립식판넬 등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설치를 제한함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을 권장 함.
단독 3-1, 3-5	단독 3-1, 3-5	용 도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을공동작업소, 노유자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용적률	○ 100%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및 외 관	○ 지붕형태 - 전면 경사지붕(지붕구배는 3/10이상, 7/10이하)권장 • 옥상조경 및 녹화율 50%이상시 경사지붕을 설치한 것으로 함 (단, 옥상녹화시 관리를 위한 수관시설 필수) ○ 건축물 외벽재료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컨테이너, 조립식판넬 등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설치를 제한함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을 권장 함.

(별표3)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유형·세대수·건폐율·용적률·높이(변경)

구분	획지번호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 (인)	평균면적 (3.3㎡당)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기정	합 계		73,412.5	2,050	5,330	-	-	-	-
	단독	-	10,074.3	39	102	-	50	100	4
	공동1-1 공동1-2 공동2-1 공동2-2	85㎡이하	63,338.2	2,011	5,228	-	60	250	-
	합 계		57,635.2	1,170	3,042	-	-	-	-
변경	합 계		10,074.3	39	102	-	50	100	4
	단독	-	10,074.3	39	102	-	50	100	4
	공동1-1 공동1-2 공동2-1	85㎡이하	47,560.9	1,131	2,940	-	60	250	-
	합 계		57,635.2	1,170	3,042	-	-	-	-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1) 주차장·변전소·폐기물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공공청사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주1~주9	변1	폐1	펌1	공공1~공공2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의한 전기 공급설비 및 부대 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시설 및 부대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에 의한 하수 처리시설(중계펌프장) 및 부대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의한 공공청사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용적률	○ 250%					
높이	○ 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간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2) 기타시설용지(종교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종1	종1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불안당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용적률	○ 250%
		높이	○ 4층 이하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상업1 ~ 상업17	상업1 ~ 상업17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3>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에 따름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구간내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함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함
		주차장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김제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 ○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등을 계획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며, 가각부 및 측면 경계부 처리시 수목을 활용함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동1 ~ 공동2	공동1 ~ 공동2	단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3>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에 따름
		단지내 차량출입	○ 차량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구간에 설치해야 함.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단지내 차량동선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출입을 금함
		주차장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김제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 ○ 주차장은 가급적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시에는 총 주차대수의 20% 이하로 하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지상주차장 설치시 바닥포장은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함
		단지내 조경	○ 보행밀집지역 및 단지 진입부에 공공조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함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함 ○ 녹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함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업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함 - 아파트 건물 주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함 - 주차장 주변 : 수음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함 ○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함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물다리의 설치를 권장함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 권장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함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함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지내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 권장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 권장 ○ 보도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 권장 -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경계부는 주변지역의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보행쉼터를 형성하도록 권장함 ○ 주차장 용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접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함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중 대형 공공시설은 야간활동 지원 및 주요 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을 설치함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해야 함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함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함 ○ 면적 1,000㎡ 이하의 대지내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함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김제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 ○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 내지 3%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며, 그 외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름

1)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로 조성기준(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함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함 - “차도 연결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함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경계부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는 연결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함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우미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함 -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음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함 ○ 진입부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함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축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함.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 -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품설치물 설치를 권장함 									
<p style="text-align: center;">공공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함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 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녁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함.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 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 - 공공조경의 단차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함.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함.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함 <p style="text-align: center;"><공공조경의 식재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수목구분</th> <th style="width: 20%;">식재밀도(본/㎡)</th> <th style="width: 20%;">상록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td> <td>0.3본 이상</td> <td>상록수 50%</td> </tr> <tr> <td>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td> <td>0.5본 이상</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음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p style="text-align: center;">공공보행통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함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안됨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함.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음 									

7. 산업단지계획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전라북도 고시 제2023-236호

2023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고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전라북도 조례 제 4795호, 2020.07.13. 일부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전라북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전라북도지사

1. 고 시 명 : 2023년도 전라북도 생활임금
2. 고시 이유
 - 전라북도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할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2023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 시간급 11,458원 / 월 2,394,722원(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
 - 전라북도, 도의회,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
 - ※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적용 제외

전라북도 고시 제2022-238호

순창 풍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 풍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9월 30일

1. 농공단지 개요(변경)

가.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죽전리 932번지 일원

나. 관리기관 : 순창군(전라북도 순창읍 경천로 33)

다. 조성목적

- 산업입지 기반조성으로 공장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 지역원자재 사용으로 농촌지역 소득증대 기여 및 지역균형 발전

라. 추진경위(변경)

- 2003. 03. 25. : 풍산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 2003. 05. 03. : 순창군의회 균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04. 01. 07. : 풍산농공단지 지구지정 전라북도 승인
- 2004. 01. 13. : 풍산농공단지 지구지정 고시
- 2004. 03. 09. : 풍산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 2004. 06. 04. : 풍산농공단지 조성공사(1차) 착공
- 2004. 07. 02. : 풍산농공단지 기공식
- 2004. 10. 11. : 풍산농공단지 분양공고
- 2004. 11. 30. : 풍산농공단지 조성공사(1차) 완공
- 2005. 08. 05.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전라북도 고시 제2005-189호)
- 2005. 09. 13. : 풍산농공단지 조성공사(2차) 준공
- 2007. 06. 29.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전라북도 고시 제2007-144호)
- 2008. 03. 21.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전라북도 고시 제2008-53호)
- 2008. 04. 04.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전라북도 고시 제2008-76호)
- 2011. 07. 23.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전라북도 고시 제2011-209호)
- 2018. 01. 15. :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순창군 고시 제2018-13호)
- 2018. 05. 31. : 풍산농공단지 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사업 준공인가에 관한 공고(순창군 공고 제2018-91호)
- 2021. 03. 26.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1-73호)

마. 분양현황(변경)

(단위 : m²)

구 분	총면적(기정)	총면적(변경)	분양면적(기정)	분양면적(변경)	조성기간	조성기관
계	138,330.4	138,330.4	113,573.0	103,454.1	2004. 3. ~ 2005. 9.	순창군
산업시설구역	110,598.7	111,920.5	110,598.7	100,479.8		
지원시설구역	3,065.8	3,019.3	2,974.3	2,974.3		
공공시설구역	15,757.3	14,482.0				
녹지구역	8,908.6	8,908.6				

바. 입주현황(변경)

구 분	입주업체수(개소)					면 적(m ²)					비고
	계(기정)	계(변경)	제조업(기정)	제조업(변경)	기타	계(기정)	계(변경)	제조업(기정)	제조업(변경)	기타	
계	8	12	8	12	-	110,598.7	111,920.5	110,598.7	111,920.5	-	
2022. 8월말	8	9	8	9		110,598.7	100,479.8	110,598.7	100,479.8		
향후계획		3		3			11,440.7		11,440.7		

사. 입지여건(변경)

시설명	2022. 8월말	확충계획
항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항 이용 - 접안능력 : 6선좌 - 하역능력 : 3백만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신항 건설 - 접안능력 : 2~5만톤 54선석 - 하역능력 : 45백만톤/년
교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대구고속도로 순창IC에서 4.5km ○ 호남고속도로 신태인IC에서 70km ○ 남원역에서 38km ○ 광주공항 이용 - 광주 ↔ 서울,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 24호선(광주↔남원) 4차로화 ○ 김제신공항 건설 - 활주로 1본(1,800m×15m)
용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수원 : 상수도 사용(393,324m³/년) ○ 1일 소요량 : 1,077.6m³ 	-
전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전력 수요 : 2,707kW ○ 공업용 수요 : 2,578kW ○ 기타 수요 : 129kW 	-
통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선수 : 91회선 	-
폐수처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창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완료 - 사업량 L=5km, 가압장 1개소 - 사업기간 : 2010. 1. ~ 2012. 2. 	
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사무소 : 1개소 	-
기 타	-	-

2.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 기본방향

- 적극적인 입주기업 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로 생산 활동 지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및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 조성

나. 입주 및 사후관리 계획(변경)

1) 입주대상업종(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에 의한 다음 업종에 한한다.

중분류	업종별	비고
C10	식료품 제조업	2017. 1. 13. 통계청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C11	음료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C24	제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L6811	부동산 임대업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2호 가목 2) 태양에너지 발전업
(단, 입주기업에 한하여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경우에 한한다.)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
- 부동산임대업(L6811)
 - ※ 부동산임대업(L6811)은 산집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함

2) 입주자격(변경)

- 가) 순창 풍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업종의 기업체 및 지원기관 단, 지원기관은 지원시설 설치계획에 의한 지원시설에 한하여 입주허용
- 나)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 다)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라) (공공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마)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바) 환경성 및 사업성 적합 업체일 것

3) 입주 우선순위

- 조성된 부지면적의 규모에 비하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입주공장을 선정한다.
 - 현존 부존자원을 우선 사용하는 업체
 -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고 자체자금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 고부가가치 업종인 첨단산업 업종
 -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 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체
 - 공해가 적고 유희 노동력 이용이 가능한 업종

4) 사후 관리계획(변경)

-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과 순창 풍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인력수급의 원활화, 공정개선을 위한 생산기술 지도, 가동지원 등 기업지원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 강화

다. 농공단지 조성 시 기대 전망**1) 생산 및 수출전망(년간)**

(단위 : 백만원)

계	내 수	수 출	비 고
60,000	55,000	5,000	

2) 고용전망

(단위 : 명)

고용계획인원	현지고용인원	외지고용인원	비 고
268	189	79	

3)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 등 소득중대 전망(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임 금 소 득	8,100	
원 자 재	2,480	
지역주민소득	2,906	

4)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단위 : 명)

구 분	계	음식료품	섬유	1차금속	기 타
총고용인원	268	8	142	55	63
현 지 고용인원	189	4	122	20	43
외 지 고용인원	79	4	20	35	20

라. 인근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과 협력 강화방안(변경)

1) 인근 입주업체 현황(변경)

- 농공단지 면적 및 업종현황

농공단지명	위 치	면 적(㎡)	지정고시일	기업수	채용인원
계(5개소)		660,718.5		33	674
가남농공단지	순창읍	82,529.0	1987. 08. 22.	2	193
풍산농공단지	풍산면	138,330.4	2004. 01. 07.	9	162
인계농공단지	인계면	148,627.0	2007. 09. 11.	10	194
쌍암농공단지	인계면	121,464.4	2020. 08. 25.	7	45
풍산제2농공단지	풍산면	169,767.7	2013. 09. 16.	5	83

2) 공공·행정기관과의 수의계약체결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우선구매 촉구

3) 협력방안 : 인근 입주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업종을 적극 유치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마. 용지의 용도별구획 계획(변경)

1) 용도별 구획면적(변경)

(단위 : ㎡)

총 면적	산업시설(기존)	산업시설(변경)	지원시설(기존)	지원시설(변경)	공공시설(기존)	공공시설(변경)	녹지시설
138,330.4 (100%)	110,598.7 (80%)	111,920.5 (80.9%)	3,065.8 (2.2%)	3,019.3 (2.2%)	15,757.3 (11.4%)	14,482.0 (10.5%)	8,908.6 (6.4%)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 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 ②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 ①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 ①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②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바. 업종별 공장 배치계획

1-1) 업종별 배치계획(기준)

(단위 : m²)

업종별	품목분류	업체수	면적	비고
계		8	110,598.7	
식료품 제조업	10	8	110,598.7	
음료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3			
1차 금속 제조업	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기타 제품 제조업	33			
부동산임대업	6811			

1)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단위 : m²)

업종별	품목분류	업체수	면적	비고
계		12	111,920.5	
식료품 제조업	C10	3	18,955.8	
음료 제조업	C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C13			
1차 금속 제조업	C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기타 제품 제조업	C33			
부동산 임대업	L6811			
식료품 제조업	C10	9	92,964.7	
음료 제조업	C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C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기타 제품 제조업	C33			
부동산 임대업	L6811			

2) 기본방향 및 원칙

- 가)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관 산업별로 집단화하여 생산성 도모
- 나) 토지이용, 교통, 단계별 사업 등에 부합되고 택지별 교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종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
- 다) 업종의 배치와 택지의 분할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계열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택지분할의 합리화

3) 배치기준(변경)

- 가)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 공장배치
- 나) 순창 풍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의 2-나항 업종에 한함

사.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용계획(변경)

시 설 물	위 치	구 조	면 적(㎡)		운 용 계 획
			기 존	변 경	
공동관리사	순창군 풍산면 죽전리 937	철콘크리트	192.6	2,974.3	입주기업 종사원 기숙사 및 식당 활용

아.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1) 관리사항**

- 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 및 공공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 나)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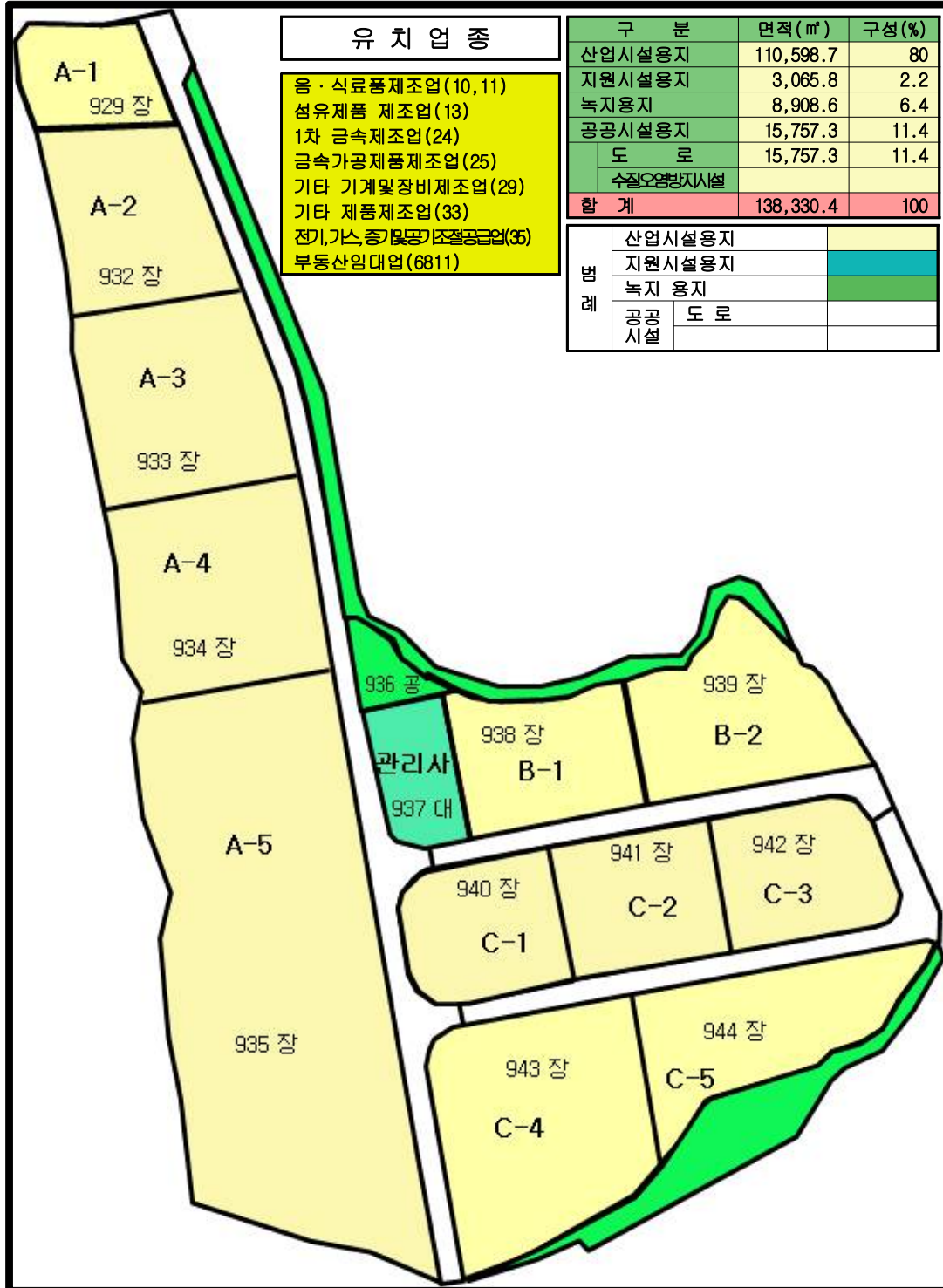
2) 지원사항

- 가) 농공단지 지원시설이라 함은 입주업체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반기능, 즉 공공행정기능, 기업 생산 활동 지원기능, 종업원 후생 복지기능 등을 말하며, 이들 시설을 농공단지 개발방향 및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배치
- 나)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게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 활동 및 기업행정에 관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의 종류와 규모 산정
- 다) 농공단지 근로자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근로환경에 적합한 후생복지 시설의 기준 및 위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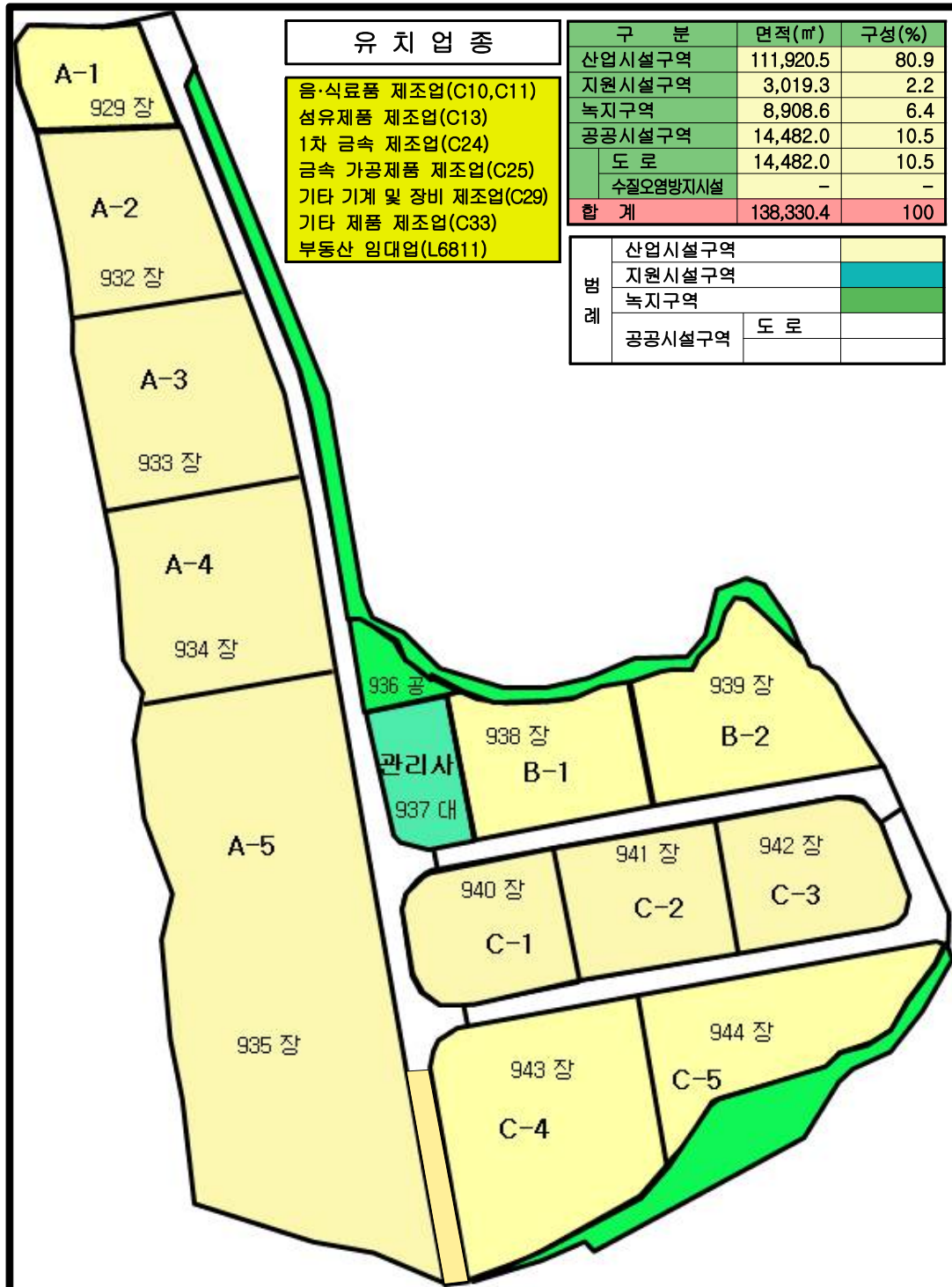
자. 용도별 구획 평면 및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표 1, 별표 2(변경)

별표 1) 용도별 구획 평면 및 업종별 배치계획도(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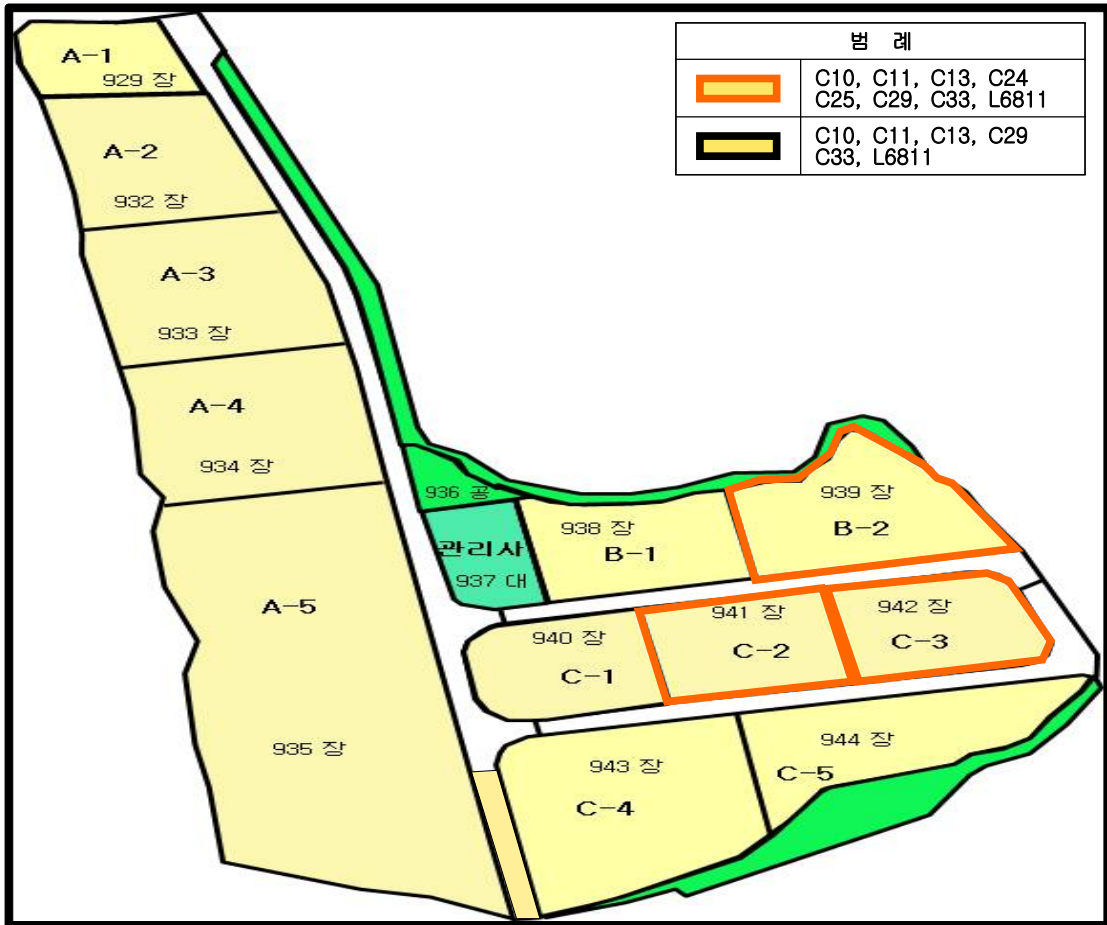
용도별 구획 평면 및 업종별 배치계획도



별표 1) 용도별 구획 평면도(변경)



별표 2)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업종별	범례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11,920.5	100	
음·식료품제조업(C10, C11) 섬유제품 제조업(C13)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제품 제조업(C33) 부동산 임대업(L6811)		18,955.8	16.9	
음·식료품제조업(C10, C11) 섬유제품 제조업(C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제품 제조업(C33) 부동산 임대업(L6811)		92,964.7	83.1	

전라북도 고시 제2022-239호

순창 풍산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 풍산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9월 30일

I. 농공단지 개요(변경)

- 1.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죽전리 836번지 일원
- 2. 관리기관 : 순창군(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3. 조성목적 : 산업입지 기반조성으로 공장유치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원자재 사용으로 농촌지역 소득증대 기여 및 지역 균형발전 기여

4. 추진경위(변경)

- 2011. 04. 29. : 신규조성 농공단지 선정
- 2011. 07. 27. : 중앙 투융자심사 승인
- 2012. 03. 02. : 보상계획 공고 및 물건조사
- 2012. 06. 27.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3. 09. 16. : 농공단지계획 승인고시 (순창군 고시 제2013-54호)
- 2013. 12. 30. : 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15. 01. 16.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5-16호)
- 2015. 1월 : 농공단지 분양공고
- 2015. 5월 : 농공단지 조성공사 완료
- 2021. 03. 26.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1-74호)
- 2022. 02. 15. : 순창군 풍산제2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순창군 고시 제2022-20호)
- 2022. 02. 18.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2-31호)

5. 입지여건

구 분	현 행	확 충 계 획
교 통	○ 광주대구고속도로 순창IC에서 4.5km ○ 남원역에서 31km ○ 광주공항 이용	○ 국도 24호선(광주↔남원) 4차로화
용 수	○ 용수원 : 지하수 사용 ○ 1일 소요량 : 906.6m ³ - 공업용수 850m ³ , 생활용수 56.6m ³	-

전 력	○ 총전력수요 : 76,059Mwh/년 ○ 공업용수요 : 75,797Mwh/년 ○ 기타 수요 : 262Mwh/년	-
폐수처리 시설	○ 총 오폐수량(일) : 536.4m ³ - 생활오수 50.4m ³ , 공장폐수 486m ³ ○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유지관리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시설 각 업체에서 개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 후 오수관을 통해 순창군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
에너지 공급계획	○ 총 량 : 24,672TOE/년 ○ 산업시설 : 24,665TOE/년 ○ 지원시설 : 7TOE/년 ○ 공 급 처 : (주)전북도시가스	-

II.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1.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단위 : m²)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69,767.7	100.0	
산업시설구역	124,177.9	73.2	
지원시설구역	7,870.8	4.6	
공공시설구역	37,719.0	22.2	
저 류 지	5,283.1	3.1	
도 로	13,700.5	8.1	
녹 지	18,735.4	11.0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변경)

가. 입주자격(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단, 입주기업에 한하여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경우에 한한다.)
- 환경성 및 사업성 적합 업체일 것

나. 입주대상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C1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제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제품제조업(C33), 식료품제조업(C10)
- 부동산임대업(L6811)
 - ※ 부동산임대업(L6811)은 산집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함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가목 2) 태양에너지 발전업

다. 입주제한 업종

- 특정유해물 및 악취 유발업종, 폐수 다량 배출시설은 입주 제한
 - ※ 위 입주제한 업종외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업체 또는 농공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환경성검토 규정에 의거 허용할 수 없는 업종(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 기타 환경에 지장을 주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라. 입주 우선순위

- 현존 부존자원을 우선 사용하는 업체
- 자체자금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 고부가가치 업종인 첨단산업 업종
-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 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체
- 공해가 적고 유희 노동력 이용이 가능한 업종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가. 용도별 구획계획

(단위 : m²)

구 분		총면적(m ²)	분양계획면적(m ²)	구성비
계		169,767.7	169,767.7	100.0%
산업 시설 구역	소 계	124,177.9	124,177.9	73.2%
	섬유제품제조업(C13)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조업(C23) 제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제품제조업(C33) 식료품제조업(C10) 부동산산업대업(L6811)	124,177.9	124,177.9	
지원시설구역		7,870.8	-	4.6%
공공 시설 구역	소 계	18,983.6	-	11.2%
	저류지	5,283.1	-	3.1%
	도 로	13,700.5	-	8.1%
녹지구역		18,735.4	-	11%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 구역

- 산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단, 입주기업에 한하여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원시설 구역

- 산집법 제2조 19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산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바목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하목
- 농공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에 포함된 건축물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변경)

가.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기준)

(단위 : m²)

업종별	현황			비고
	품목종류(중분류)	업체수(개)	면적(m ²)	
섬유제품제조업(C13)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조업(C23) 제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제품제조업(C33) 식료품제조업(C10) 부동산임대업(L6811)	C13, C22, C23, C24, C25, C28, C29, C33, C10, L68	8	124,177.9	

가.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변경)

(단위 : m²)

업종별	현황			비고
	품목종류(중분류)	업체수(개)	면적(m ²)	
계		8	124,177.9	
섬유제품제조업(C13)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조업(C23) 제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제품제조업(C33) 식료품제조업(C10) 부동산임대업(L6811)	C13, C22, C23, C24, C25, C28, C29, C33, C10, L68	2	12,500.2	
섬유제품제조업(C13)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조업(C23)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제품제조업(C33) 식료품제조업(C10) 부동산임대업(L6811)	C13, C22, C23, C28, C29, C33, C10, L68	6	111,677.7	

나. 업종별 배치기준

- (1)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 공장배치
- (2) 풍산 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2-나항 업종에 한함

다.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표 #1**

라. 업종별 배치 계획도 : **별표 #2(변경)**

5.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변경)

가. 분양용지관리

- 농공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농공단지 통합관리지침, 본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 관리한다.
-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산업용지(공장) 임대사업은 산집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다.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산집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 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 준공 불가능 인정, 사업 미착수, 사업의 휴지(休止)등이 있는 때에는 산집법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산집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 수출, 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농공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 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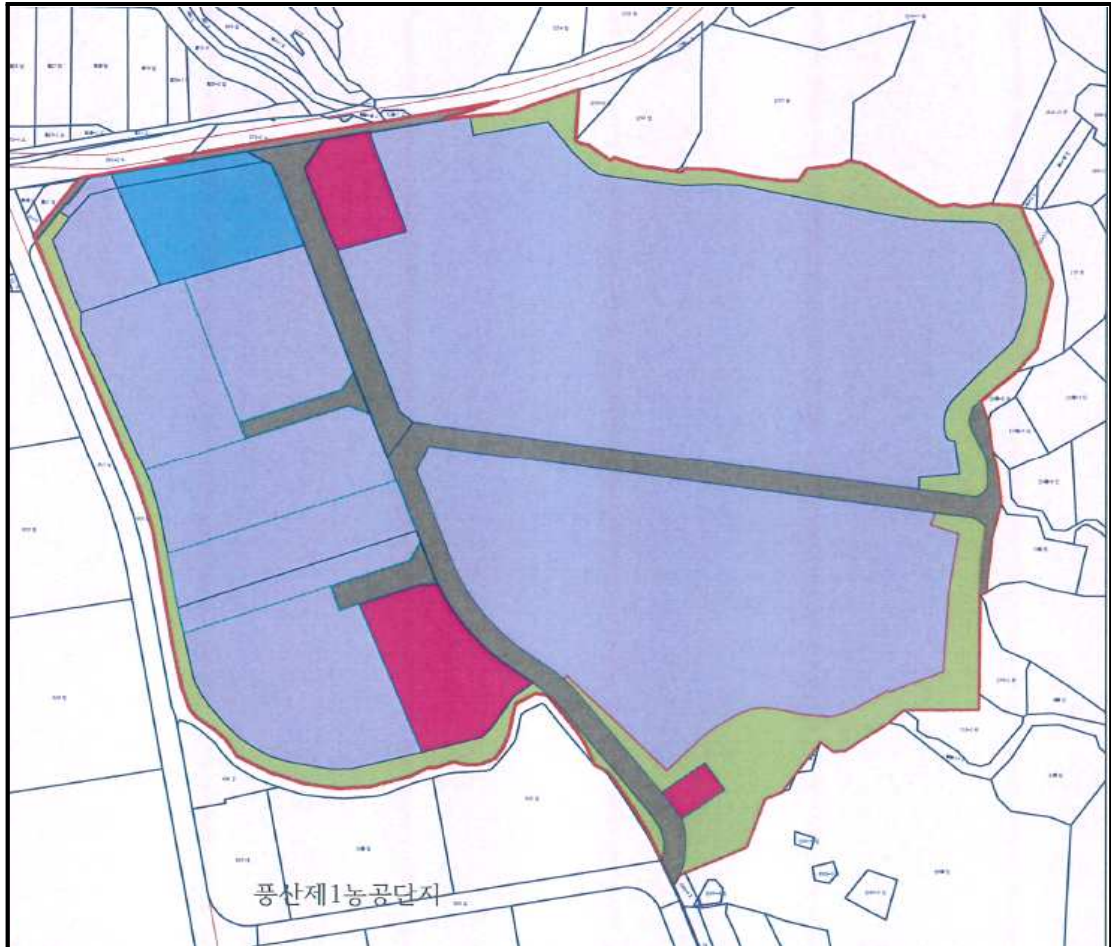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농공단지 내 파출소, 소방서 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관리기관은 농공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농공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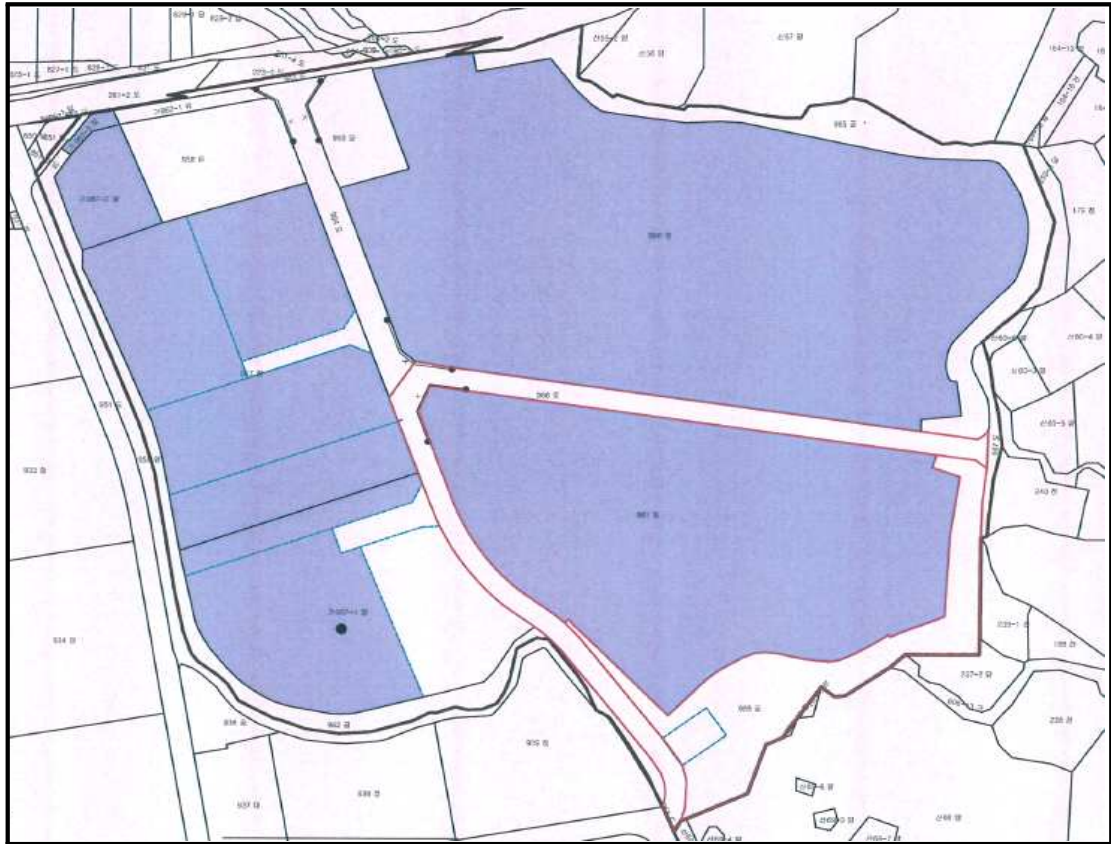
용도별 구획 평면도



구 분		범 례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69,767.7	100.0%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		124,177.9	73.2%	
지원시설구역	지원시설		7,870.8	4.6%	
공공시설구역	소 계		18,983.6	11.2%	
	저류지		5,283.1	3.1%	
	도 로		13,700.5	8.1%	
녹지구역	녹 지		18,735.4	11%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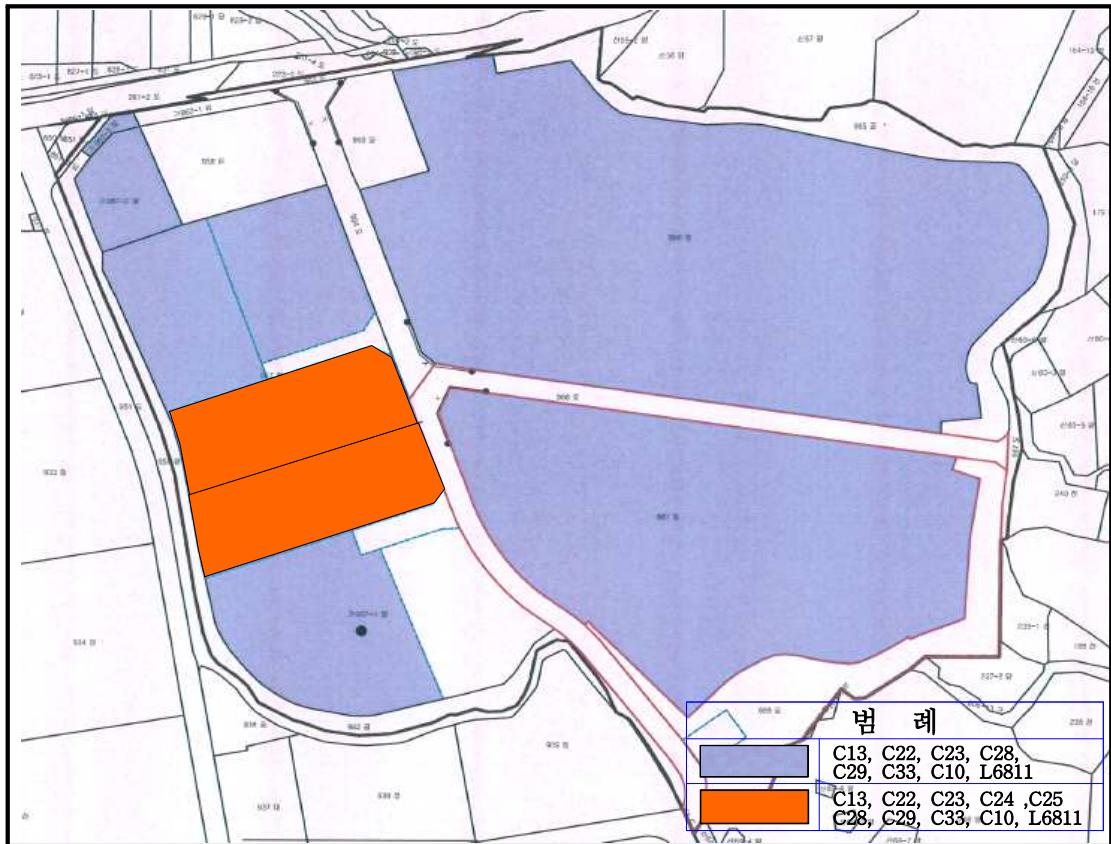
업종별 배치계획도(기존)



업종별	범례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24,177.9	100	
섬유제품제조업(C13)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조업(C23) 제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제품제조업(C33) 식료품제조업(C10) 부동산임대업(L6811)		124,177.9	100	

[별표 2]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업종별	범례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24,177.9	100	
섬유제품제조업(C13)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조업(C23) 제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제품제조업(C33) 식료품제조업(C10) 부동산임대업(L6811)		12,500.2	10.1	
섬유제품제조업(C13)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조업(C23)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제품제조업(C33) 식료품제조업(C10) 부동산임대업(L6811)		111,677.7	89.9	

전라북도 고시 제2022-244호

2022년도 2차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2년도 2차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9월 30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2022년도 2차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 (남원시장)
- ③ 사업기간 : '22. 9월 ~ '23. 12월
- ④ 사업지구 지정 내역 : 1개시, 1지구, 2,501필지, 1,298,041㎡

시·군	사업지구명	사업위치	필지	면적(㎡)
남원시	운봉읍내지구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1-1번지 일원	2,501	1,298,041

- ⑤ 관 리 청 : 전라북도(토지정보과)
- ⑥ 토 지 조 서 : 도보게재 생략
- 관계서류는 전라북도 토지정보과 및 해당 사업지구 지적소관청에 비치
-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2-245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제2차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변경사항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9월 30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2개시·군 지적소관청(남원시장, 장수군청)
-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치	비고
2021	남원시	백일지구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728번지 일원	
2022	장수군	가곡지구	장수군 계남면 가곡리 5-2번지 일원	
		장안지구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541-2번지 일원	

④ 필지 및 면적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남원시	백일지구	595	392,548	602	306,391	7 (1.2%)	△86,157 (-21.9%)	
장수군	가곡지구	958	559,762	966	417,183	8 (0.8%)	△142,579 (-25.4%)	
	장안지구	307	216,090	321	157,355	14 (4.5%)	△58,735 (-27.1%)	

- ⑤ 변경사유 : 필지 분할(지구계측량)에 따른 사업대상 필지수 및 면적변경
- ⑥ 지번별조서 : 도보게재 생략
 - 관계서류는 전라북도 토지정보과 및 해당 사업지구 지적소관청에 비치
-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2-246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익산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사항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9월 30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익산시청)
-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치	비고
2021	익산시	제성1지구	익산시 옹포면 제성리 546번지 일원	
		제성2지구	익산시 옹포면 제성리 123번지 일원	
		호산지구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71번지 일원	
		황등1지구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3-11번지 일원	
		황등2지구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229-1번지 일원	

④ 필지 및 면적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익산시	제성1지구	344	199,826	347	200,013	3 (0.9%)	187 (0.1%)	
	제성2지구	105	161,181	98	151,828	△7 (-6.7%)	△9,353 (-5.8%)	
	호산지구	486	344,164	494	344,768	8 (1.6%)	604 (0.2%)	
	황등1지구	504	136,560	519	117,518	15 (3.0%)	△19,042 (-13.9%)	
	황등2지구	630	200,885	637	188,341	7 (1.1%)	△12,544 (-6.2%)	

- ⑤ 변경사유 : 필지 분할(지구계측량)에 따른 사업대상 필지수 및 면적변경
- ⑥ 지번별조서 : 도보계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익산시청 이세림(063-859-5205)
-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2-247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익산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사항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9월 30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익산시청)
-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치	비고
2022	익산시	교동1지구	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127번지 일원	

④ 필지 및 면적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익산시	교동1지구	1,108	428,931	1,112	422,921	4 (0.4%)	△6,010 (-1.4%)	

- ⑤ 변경사유 : 필지 분할(지구계측량)에 따른 사업대상 필지수 및 면적변경
- ⑥ 지번별조서 : 도보계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익산시청 이세림(063-859-5205)
-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2-248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임실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사항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9월 30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임실군청)
-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치	비고
2022	임실군	관촌지구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21-6번지 일원	
		덕천지구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311번지 일원	

④ 필지 및 면적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임실군	관촌지구	1,313	574,239	1,324	575,337	11 (0.8%)	1,098 (0.2%)	
	덕천지구	199	64,582	198	64,406	△1 (-0.5%)	△176 (-0.3%)	

- ⑤ 변경사유 : 필지 분할(지구계측량)에 따른 사업대상 필지수 및 면적변경
- ⑥ 지번별조서 : 도보게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임실군청 강 훈(063-640-2134)
-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59호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 경제 회생 및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기한 연장

-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조선산업 분야 투자기업 감면(안 제9조의2)
 - 감면기한 1년 연장 : 2022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종료(2023.4.4)를 고려하여 2023.12.31.까지 1년 연장

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조선산업 분야 투자기업 감면(안 제9조의2)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2항
 -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 2)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6조제1항제3호)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예산과 협의

다. 합 의 : 감사관(부패영향평가),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예산과(재정부담), 법무행정과(규제심사),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라. 입법예고 : 2022년 9월 30일 ~ 10월 20일

마. 비용추계서 : 붙임

바. 기타사항

1) 지방세 감면 기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23.4.4.)이 종료된 후
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
제시 요청 및 결과 회신

※ 회신 결과 : 가능(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811호)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몰연장 타당성 검
토를 연구용역 의뢰(한국지방세연구원)하여 용역 결과를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자
료로 활용 예정('22.10월중)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세정과 세정팀(전화 : 063-280-2318, FAX : 063-280-231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세정과 세정팀(063-280-2318)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용일 부터”를 “사용일부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를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 중 “감면함에 있어”를 “감면할 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9조의2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이 지정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에 적용에 있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② (생 략)</p> <p>제6조(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p> <p>1. (생 략)</p> <p>2. 「<u>식품산업진흥법</u>」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p> <p>3. 「<u>식품산업진흥법</u>」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p> <p>② (생 략)</p> <p>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u>부가가치세법</u>」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p>	<p>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20조제1항-----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식품산업진흥법</u>」 제19조의3제1항----- -----</p> <p>3. 「<u>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5조제1항제1호-----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 ----- 「<u>부가가치세법</u>」 제8조----- -----</p>

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된)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생략)

제9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산업·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한 업종 중 자동차산업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동차산업 또는 조선산업의 하도급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생략)

제13조(전라북도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자가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성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제14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 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같은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산업·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 2023년 12월 31일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전라북도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 따른 -----

제14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특구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 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5조(자동이체 등)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생략)

제18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사용일부터 -----
----- 터 -----

제15조(자동이체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

제19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9조(감면 신청 등) ① -----

----- 별지 제1호서식에 따
른 -----

② -----
----- 별지 제
2호서식-----.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중복감면의 배제) -----
----- 감면할 때 -----
-----.

참고1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가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참고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28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공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군산시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1년간 연장합니다.

2022. 3. 3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요내용

- 대상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연장기간 : 2022년 4월 5일 ~ 2023년 4월 4일 (1년간)

붙임

비용추계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2022년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도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세제지원함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종료('23.4.4.)로 '23년 이후 추가 감면 연장 없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몰 연장 대상 감면액의 연평균 실적 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출	-	-	-	-
수입	△1,812	-	-	△1,812

4. 재원조달 계획 : 해당없음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사용된 전제가 변경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6. 협의사항 : 예산과 협의

7. 작성자: 전라북도 세정과 박대화(280-2318)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도세 감면 일몰 연장 대상 감면액 현황(최근3년)

- 감면기간 : 2023년(1년)

(단위:백만원)

조 문	주요 내용	합계	감면액			3년 평균
			'19년	'20년	'21년	
제9조의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투자기업 감면	5,437	3,963	550	924	1,812

※ 감면추계 : 2019년 ~ 2021년 감면 연평균실적 기준

전라북도 공고 제2022-1459호

비영리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4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 9. 30.
전라북도지사

▣ 공 고 사 항

1. 허가번호 : 제2015-71호
2. 법 인 명 : 재단법인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3.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전라감영로 72, 4층
4. 대 표 자 : 김관영
5. 설립목적 : 전라북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창작역량 강화와 향유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6. 변경 허가사항 : 정관변경 제38조(공고방법)

현 행(구)	개 정(신)
제38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u>공고</u> 는 도 또는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38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u>공고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u> 은 도 또는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7. 변경 허가일자 : 2022. 9. 21

전라북도 공고 제2022-1474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고창군선주협회)**

「민법」 제32조 및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전라북도지사

- 1. 허가번호 : 제2022-33호
- 2. 법인명 : 사단법인 고창군선주협회
- 3.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160-3
- 4. 대표자 : 방채열
- 5. 설립목적 : 회원 상호협력, 친목도모, 권익신장 등 지역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6. 허가구분 : 신규
- 7. 주된사업

- 가. 회원 상호협력, 친목도모, 권익신장, 복지증진 사업
- 나.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 다. 법인의 홍보를 위한 사업
- 라.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라북도 공고 제2022-1478호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2. 9. 30.
전라북도지사

1. 공청회 개최 목적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전문가, 주민 등 의견청취

2.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 공고기간 : 2022. 9. 28.(수) ~ 10. 11.(화) / 14일간

3.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가. 일 시 : 2022. 10. 12.(수), 14:00~16:00
- 나. 장 소 : 라한호텔(전주) 마루홀
- 다. 참석대상 : 지역주민, 관련기업, 이해 관계자 등

4. 규제자유특구계획 개요

- 가. 명칭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 나. 위치 :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지역 등
- 다. 면적 : 42,887,009㎡ 및 도로 223km
- 라. 지정기간 : 2019. 12. 6. ~ 2023. 12. 5.(4년)
* 실증특례 유효 기간 : 2020. 1. 1. ~ 2023. 12. 5.(4년)
- 마. 지정목적 : 친환경자동차 산업 고도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 바. 실증특례 :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5.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 내용

가. 특구사업자 및 면적 변경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특구사업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삭제
특구사업자 면적	42,887,009㎡	42,685,509㎡ (제외면적 : 201,500㎡)
지형도	<p><건설기계부품연구원 종합시험장> 총 면적 : 200,000 m²</p> <p><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총 면적 : 1,500 m²</p>	삭제
<p>【변경사유】</p> <p>○ 임시허가 전환 또는 예정에 따라 사업화가 가능한 기업(특구사업자)을 중심으로 특구사업자 및 면적 변경이 필요함 * 규제자유특구 주요 사업내용은 변동사항 없음</p>		

나.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전환(2건)

실증특례	(당초) 실증특례기간	(변경) 임시허가기간
(특례①)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2020.01.01. ~ 2023.12.5.(4년)	2023.01.01. ~ 2023.12.5.(1년)
(특례②)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p>【변경사유】</p> <p>○ 안전성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에서 관련법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규개정 전까지 사업화를 위하여 임시허가 전환이 필요함</p> <p>* 규제자유특구 주요 사업내용은 변동사항 없음</p>		

6.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2. 10. 11.(화) 18:00시까지(마감시한 도착분까지 유효)

나. 제출양식 : 붙임 양식 참조

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의견서 제출

- 서면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주력산업과
- 이메일 : kcc9145@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주력산업과(☎063-280-22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안) 공청회 의견서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연락처
	주소	
의견 내용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전라북도 공고 제2022-1485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전라북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명	지방도 796호선
도로공사의 종류	교량 재가설 L=34.5m B=11.0m(2차로)		
도로공사 구간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55-5번지 일원		
도로공사 시행장소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55-5번지 일원 (예전3교)		
도로공사 착공 예정일	2022. 10. 01.	도로공사 준공 예정일	2024. 06. 30
도로공사 목적 및 사유	선동천 개선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도 796호선 구간의 교량을 하천시설기준에 맞게 재가설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1486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9월 30일

1. 법 인 명 : 사단법인 정가보존회
2.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정동 77
3. 대표자성명 : 권병로
4. 설 립 목 적 : 전통정가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보급함으로써
전통문화 예술진흥 및 계승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5. 허가구분 : 정관 변경(제10조, 제27조)
6. 변경허가연월일 : 2022. 9. 28.

전라북도 공고 제2022-1490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9월 30일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59호	유한회사 케이와이산업 대표자 권영목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호남로 1046-8	2022.09.23.

끝.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2-7호

재산등록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선출직 공개대상자 11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2년 9월 30일

붙임: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1부(별첨).

군산시 고시 제2022-157호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군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740	8	국지도로	348	선양동 924-2 소로2-31	미원동 45-2 중로1-3	일반 도로		전북고136('87.10.22)	
변경	소로	2	740	8	국지도로	348	선양동 924-2 소로2-31	미원동 45-2 중로1-3	일반 도로		전북고136('87.10.22)	폭원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소로2-740	소로2-7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구간 폭원 확장 - 8m → 8~1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구간 폭원 확장을 위한 경미한 변경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2 - 199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17호)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2-93호(2022.7.1.)호와 관련하여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군산시 조촌동 119-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17호)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변경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2년 9월 30일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119-7번지 외 12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17호) 조성사업
 - 2) 명 칭 : 군산 조촌동 완충녹지 17호 조성사업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A=8,789.2㎡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산림녹지과)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2. 7. 1. ~ 2024. 6. 30.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당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조촌동	119-7	임	72.0	72.0	군산시					
조촌동	119-8	전	106.0	106.0	군산시					
조촌동	119-20	임	202.0	202.0	군산시					
조촌동	119-21	임	2,978.0	2,978.0	군산시					
조촌동	126-32	전	154.0	154.0	군산시					
조촌동	126-33	전	377.0	377.0	군산시					
조촌동	126-34	전	263.0	263.0	군산시,					
					경남기업 주식회사	충남 아산시 청운로 176번길 25. 2층				
조촌동	909-1	잡	4,637.2	3,125.5	군산시					
조촌동	119-10	임	1,488.0	31.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조촌동	126-1	전	3,139.0	744.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조촌동	126-6	전	25.0	25.0	군산시					
					경남기업 주식회사	충남 아산시 청운로 176번길 25. 2층				
조촌동	126-9	임	73.0	22.0	국(기획재정부)					
조촌동	909-2	잡	1,515.2	689.7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합 계	13필지		15,029.4	8,789.2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조촌동	119-7	임	72.0	72.0	군산시					
조촌동	119-8	전	106.0	106.0	군산시					
조촌동	119-20	임	202.0	202.0	군산시					
조촌동	119-21	임	2,978.0	2,978.0	군산시					
조촌동	126-32	전	154.0	154.0	군산시					
조촌동	126-33	전	377.0	377.0	군산시					
조촌동	126-34	전	263.0	263.0	군산시, 경남기업주식회사	충남 아산시 청운로 176번길 25. 2층				
조촌동	909-1	잡	3,125.5	3,125.5	군산시					
조촌동	119-10	임	30.0	30.0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감 1
조촌동	126-1	전	747.0	747.0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증 3
조촌동	126-6	전	25.0	25.0	군산시, 경남기업주식회사	충남 아산시 청운로 176번길 25. 2층				
조촌동	126-9	임	23.0	23.0	국(기획재정부)					증 1
조촌동	909-2	잡	686.7	686.7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감 3
합 계	13필지		8,789.2	8,789.2						

군산시 공고 제2022 - 199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4호선 외 2개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2-49호(2022.4.8.)호와 관련하여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군산시 조촌동 739-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4호선 외 2개노선)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변경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2년 9월 30일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739-6번지 외 19필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 2) 명 칭 : 조촌동 경남아너스빌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대로1-4호선 외 2개노선)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변경)

- 1) 당초 : 대로 1-4 : B=3m, L=48m, A=97.2m²(폭원확장구간 개설)
중로 3-6 : B=3~6m, L=250m, A=1,167.7m²(폭원확장구간 개설)
소로 2-1120 : B=8m, L=60m, A=482.0m²(노선 신설)
- 2) 변경 : 대로 1-4 : B=3m, L=48m, A=97.2m²(폭원확장구간 개설)
중로 3-6 : B=3~6m, L=250m, A=1,163.1m²(폭원확장구간 개설)
소로 2-1120 : B=8m, L=60m, A=490.0m²(노선 신설)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176번길 25, 2층(권곡동)

2) 사업시행자 성명 : 경남기업(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1) 당초 : 2022. 4. 8. ~ 2025. 6. 30.

2) 변경 : 2022. 4. 8. ~ 2026. 5. 4.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대로1-4호선

(변경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조촌동	739-1	대	492.8	68.0	군산시					
2	조촌동	739-7	대	319.6	29.2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계	2필지			812.4	97.2						

(변경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조촌동	739-1	대	167.0	68.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	조촌동	739-7	대	29.2	29.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계	2필지			196.2	97.2						

- 중로3-6호선

(변경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조촌동	739-1	대	492.8	99.0	군산시					
2	조촌동	739-2	대	177.9	68.5	군산시					
3	조촌동	739-3	대	226.6	87.2	군산시					
4	조촌동	739-4	대	196.9	75.8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5	조촌동	739-5	대	239.9	97.8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6	조촌동	739-6	수	10,904.1	28.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7	조촌동	739-53	잡	2,844.1	247.1	군산시					
8	조촌동	739-55	수	196.0	73.1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9	조촌동	739-62	대	429.9	23.2	군산시					
10	조촌동	797	도	2,805.6	73.0	군산시					
11	조촌동	909	잡	2,636.3	294.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12	조촌동	963	도	1,500.9	1.0	군산시					
계	12필지			22,651.0	1,167.7						

(변경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조촌동	739-1	대	167.0	99.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	조촌동	739-2	대	68.4	68.4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	조촌동	739-3	대	87.2	87.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	조촌동	739-4	대	75.8	75.8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5	조촌동	739-5	대	97.8	97.8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6	조촌동	739-6	수	27.6	27.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7	조촌동	739-53	잡	247.2	247.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8	조촌동	739-55	수	99.3	73.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9	조촌동	739-62	대	23.1	23.1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0	조촌동	797-1	도	73.3	73.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1	조촌동	909	잡	289.6	289.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2	조촌동	963	도	1,500.9	1.0	군산시					
계	12필지			2,757.2	1,163.1						

- 소로2-1120호선

(변경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조촌동	122-2	대	273.0	69.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2	조촌동	122-3	대	30.0	27.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3	조촌동	122-5	대	111.0	22.0	경남기업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176번길 25, 2층(권곡동)				
						신영호	군산시 조촌동 122				
4	조촌동	122-6	대	144.0	95.0	정영임	군산시 조촌동 125-1				
5	조촌동	122-7	전	330.0	160.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6	조촌동	122-12	대	63.0	50.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7	조촌동	122-18	전	189.0	59.0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계	7필지			1,140.0	482.0						

(변경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조촌동	122-24	대	71.0	71.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	조촌동	122-25	대	27.0	27.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	조촌동	122-26	대	12.0	12.0	경남기업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176번길 25, 2층(권곡동)				
						신영호	군산시 조촌동 122				
4	조촌동	122-27	대	10.0	10.0	경남기업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176번길 25, 2층(권곡동)				
						신영호	군산시 조촌동 122				
5	조촌동	122-28	대	92.0	92.0	정영임	군산시 조촌동 125-1				
6	조촌동	122-29	전	165.0	165.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7	조촌동	122-12	대	50.0	50.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8	조촌동	122-18	전	63.0	63.0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계	8필지			490.0	490.0						

○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 건물조서

- 소로2-1120호선

(변경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물건			소유자		비고
				물건명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성명	주소	
1		122-5	대	건물	콘크리트 (9.0m x 5.5m x 2.0m)	1채	신영호	군산시 조촌동 122	
				건물	콘크리트 (9.5m x 5.5m x 3.0m)	1채	경남기업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176번길 25, 2층 (권곡동)	
				건물	슬레이트+콘크리트 (12m x 5.5m x 2.5m)	1채			
2	조촌동	122-6	대	건물	슬레이트+콘크리트 (9.0m x 7.0m x 4.0m)	1채	정영임	군산시 조촌동 125-1	
3		122-12	대	건물	샌드위치판넬+콘크리트 (12m x 6.5m x 4.0m)	1채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4		122-2	대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23m x 10m x 10m)	1채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계		4필지							

(변경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물건			소유자		비고
				물건명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성명	주소	
1		122-26	대	건물	콘크리트 (9.0m x 5.5m x 2.0m)	1채	신영호	군산시 조촌동 122	관련지번 (122-5)
				건물	콘크리트 (9.5m x 5.5m x 3.0m)	1채	경남기업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176번길 25, 2층 (권곡동)	
		122-27	대	건물	슬레이트+콘크리트 (12m x 5.5m x 2.5m)	1채			
2	조촌동	122-28	대	건물	슬레이트+콘크리트 (9.0m x 7.0m x 4.0m)	1채	정영임	군산시 조촌동 125-1	관련지번 (122-6)
3		122-22	대	건물	샌드위치판넬+콘크리트 (12m x 6.5m x 4.0m)	1채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관련지번 (122-12)
4		122-24	대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23m x 10m x 10m)	1채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관련지번 (122-2)
계		5필지							

완주군 고시 제2022-76호

완주 군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완주군 고산제2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 군계획시설(문화공원)의 결정(변경)(경미한 변경)사항을 포함한 군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2년 9월 30일

I.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1.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고산 제2 문화공원	문화공원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일원	49,714	감)1,154	48,560	전라북도고시 제2013-284 (2013.11.15)	

■ 공원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고산 제2문화공원	○ 면적감소 - 49,714㎡ → 48,560㎡(감 1,154㎡)	○ 공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유지 및 국유지 제척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시설구분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물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	
합 계	49,714	48,560	100.0	4,568.26	5,142.31	9동	4,707.93	5,267.10	9동	
교양시설	24,362	24,362	50.2	4,533.96	5,117.46	8동	4,673.63	5,242.25	8동	
편익시설	61	61	0.1	34.30	24.85	1동	34.30	24.85	1동	
기반시설	11,944	11,872	24.4	-	-	-	-	-	-	
녹지	13,347	12,265	25.3	-	-	-	-	-	-	

나. 조성계획 세부 결정(변경) 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물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규모	
합 계				49,714	48,560	4,568.26	5,142.31	9동	4,707.93	5,267.10	9동	
소 계				24,362	24,362	4,533.96	5,117.46	8동	4,673.63	5,242.25	8동	
교양 시설	1-1	1-1	전통문화 체험장	계	4,513	4,513	970.24	970.24	4동	970.24	970.24	4동
				안채	-	-	227.52	227.52	1동	227.52	227.52	1동
				사랑채	-	-	72.58	72.58	1동	72.58	72.58	1동
				행랑채	-	-	97.20	97.20	1동	97.20	97.20	1동
				한옥숙박체험관	-	-	572.94	572.94	1동	572.94	572.94	1동
	1-2	1-2	청소년전통 문화체험장	계	11,342	11,342	1,433.52	1,433.52	2동	1,433.52	1,433.52	2동
				청소년전통 문화체험관	4,340	4,340	1,116.00	1,116.00	1동	1,116.00	1,116.00	1동
				야외전통 무예체험장	3,984	3,984	-	-	-	-	-	-
				밀리터리파크	3,018	3,018	317.52	317.52	1동	317.52	317.52	1동
	1-3	1-3	어린이모험 체험장	계	8,507	8,507	2,130.20	2,713.70	2동	2,269.87	2,838.49	2동
				놀토피아	5,251	5,251	1,580.20	1,863.70	1동	1,580.20	1,863.70	1동
				어린이안전 종합교육체험장	3,256	3,256	550.00	850.00	1동	689.67	974.79	1동
편익 시설	소 계			61	61	34.30	24.85	1동	34.30	24.85	1동	
기반 시설	4-1	4-1	화장실	화장실	61	61	34.30	24.85	1동	34.30	24.85	1동
	소 계				11,944	11,872	-	-	-	-	-	
	5-1	5-1	다목적광장	다목적광장	2,696	2,696	-	-	-	-	-	
	5-3	5-3	주차장	주차장	6,130	6,130	-	-	-	-	-	
	5-4	5-4	도로	도로	851	779	-	-	-	-	-	
5-5	5-5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2,267	2,267	-	-	-	-	-		
녹지	소 계			13,347	12,265	-	-	-	-	-	-	
	6-1	6-1	녹지	녹지	13,347	12,265	-	-	-	-	-	

다. 동선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총괄조서

구분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기정	합 계	6	412	3,118	2	73	1,040	-	-	-	4	339	2,078
변경	합 계	6	412	3,046	2	73	968	-	-	-	4	339	2,078
기정	진입로	2	244	2,183	1	54	851	-	-	-	1	190	1,332
변경	진입로	2	244	2,111	1	54	779	-	-	-	1	190	1,332
기정	연결로	4	168	935	1	19	189	-	-	-	3	149	746

2)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면 적 (㎡)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4	진입로	54	851	주출입구	다목적광장	
변경	소로	1	1	14	진입로	54	779	주출입구	다목적광장	
기정	소로	1	3	10	연결로	19	189	소로3-2	전통문화체험장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3	1	7	진입로	190	1,332	부출입구	주차장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3	2	7	연결로	68	482	소로1-1	소로3-1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3	3	4	연결로	18	75	소3-2	전통문화체험장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3	4	3	연결로	63	189	소3-1	주차장	보행자도로

II. 군계획시설(고산제2문화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고산제2문화공원)사업
 - 나. 명 칭 : 완주 전통문화 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완주군수
 - 나. 주 소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4.01.24. ~ 2023.12.31.

5.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당 초 : 49,714㎡(전체 49,714㎡ 중 1단계 25,254㎡)

나. 변 경 : 48,560㎡(전체 48,560㎡ 중 1단계 25,182㎡)

시설 구분	시설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건 축 물 (㎡)			비고
			기 정	변 경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	
총 계			49,714	48,560	4,707.93	5,267.10	9동	
교양 시설	소 계		24,362	24,362	4,673.63	5,242.25	8동	
	1-1	전통문화체험장	4,513	4,513	970.24	970.24	4동	1단계
	1-2	청소년전통문화체험장	11,342	11,342	1,433.52	1,433.52	2동	
		청소년전통문화체험관	4,340	4,340	1,116.00	1,116.00	1동	1단계
		야외전통무예체험장	3,984	3,984	-	-	-	1단계
		밀리터리파크	3,018	3,018	317.52	317.52	1동	4단계
	1-3	어린이모험체험장	8,507	8,507	2,269.87	2,838.49	2동	
		놀토피아	5,251	5,251	1,580.20	1,863.70	1동	1단계
		어린이안전교육체험관	3,256	3,256	689.67	974.79	1동	3단계
편익 시설	소 계		61	61	34.30	24.85	1동	
	4-1	화 장 실	61	61	34.30	24.85	1동	1단계
기반 시설	소 계		11,944	11,872	-	-	-	
	5-1	다목적광장	2,696	2,696	-	-	-	2단계
	5-3	주 차 장 (북측)	4,177	4,177	-	-	-	1단계
	5-3	주 차 장 (남측)	1,953	1,953	-	-	-	2단계
	5-4	도 로	851	779	-	-	-	1단계
	5-5	보행자도로	2,077	2,077	-	-	-	1단계
	5-5	보행자도로(소3-4)	190	190	-	-	-	2단계
녹지	소 계		13,347	12,265	-	-	-	
	6-1	녹 지	13,232	12,265	-	-	-	2단계
	6-1	녹 지	115	-	-	-	-	4단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따로 붙임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연번	군	면	리	지 번		지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성 명	주 소	
합 계				11필지	2필지		50,403	48,667	49,714	48,560			
1	완주	고산	소향	162	162	잡	45,411	45,411	45,304	45,304	완 주 군		
2	완주	고산	소향	162-2	162-2	잡	3,256	3,256	3,256	3,256	완 주 군		
3	완주	고산	소향	365-1	-	천	10	-	10	-	오 중 선	대아저수로 363	제외
4	완주	고산	소향	365-2	-	천	43	-	43	-	오 중 선	대아저수로 363	제외
5	완주	고산	소향	365-3	-	도	380	-	380	-	전라북도		제외
6	완주	고산	소향	365-4	-	도	60	-	6	-	전라북도		제외
7	완주	고산	소향	366-2	-	도	250	-	202	-	완 주 군		제외
8	완주	고산	소향	366-3	-	도	519	-	446	-	전라북도		제외
9	완주	고산	소향	366-4	-	도	412	-	5	-	국(국토교통부)		제외
10	완주	고산	소향	880-34	-	천	44	-	44	-	국(기획재정부)		제외
11	완주	고산	소향	881-4	-	도	18	-	18	-	국(기획재정부)		제외

완주군 공고 제2022-1397호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완주군 화산승마체험장 조성을 위한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의 결정(변경)(경미한 변경)사항을 포함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전에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완 주 군 수
2022년 9월 30일

I. 실시계획에 반영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1.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가.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7	체육 시설	공공 승마장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474번지 일원	66,504	감 4	66,500	완주군 고시 제2010-71호 (2010.06.11)	

나.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6	12	국지 도로	135	화월리 465-1도	화월리 478-1도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7	8	국지 도로	164	화월리 478-1도	화월리 502-1도	일반 도로	-	-	

다.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사유서

변경전 면적	변경후 면적	변경내용	변경사유
66,504	66,500	-4㎡ 감소	◦ 분할측량에 따른 지면변경 및 면적 감소

II.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변경내용 : 사업면적 및 분할시행)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474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사업
 - 나. 명 칭 : 화산승마체험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분할시행)
 - 가. 체육시설(당초) : A=66,504㎡
 - 1차분 : 34,840㎡[조성 완료(도로 : 소로1-6호선 포함)]
 - 2차분 : 31,664㎡[(도로 : 소로2-7호선 포함)]
 - 나. 도로(소로 2-7호선, 당초) : L=164m, B=8m(변경없음)
 - 다. 체육시설(변경) : A=66,500㎡
 - 1차분 : 34,840㎡[조성 완료(도로 : 소로1-6호선 포함)]
 - 2차분 : 22,560㎡[(도로 : 소로2-7호선 포함)]
 - 3차분 : 9,100㎡[주차장]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완주군수(농업축산과)
 - 나. 주 소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분할시행에 따른 변경)
 - 가. 당 초 : 2021. 07. 16. ~ 2022. 12. 31.
 - 나. 2 차 분 : 2021 .07. 16. ~ 2022. 12. 31.
 - 나. 3 차 분 : 2021 .07. 16. ~ 2023. 12. 31.(변경)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따로 붙임
7. 열람(의견제출)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8. 열람(의견제출)장소 :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2), 농업축산과(063-290-3242), 화산면행정복지센터(063-290-3714)
9.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0. 의견제출 : 관계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주 소	소유자의 권리권자	비고
1	490	잡	107	107	완주군	-	-	
2	491	창	1,572	1570	완주군	-	(기존번지)	
3	491-2	답	760	615	신원식	화월리 466	(기존번지)	
4	491-6	도	43	3	오정남	전주부 완산정 43	변경전 : 491-1 변경전면적 : 7 m ²	
5	495	답	914	914	완주군	-	-	
6	491-4	창	2	2	완주군	-	-	
7	497-1	목	363	153	완주군	-	-	
8	497-6	답	494	442	완주군	-	-	
9	497-9	목	1,426	1,274	완주군	-	-	
10	501-1	도	48	6	완주군	-	-	
11	502-1	도	216	112	완주군	-	-	
12	503	도	129	90	완주군	-	-	
13	504-3	도	823	339	완주군	-	-	
14	505-3	도	20	20	강준석	화월리 464-2	채권자 화산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5	903-9	도	75	75	국(건설부)	-	-	
16	903-10	도	268	268	국(건설부)	-	-	
17	903-11	도	159	159	국(건설부)	-	-	
18	505-4	도	13	13	완주군	-	-	
19	506-6	도	26	22	장원균	화월리 466	변경전 : 506-4	
20	608-2	대	419	419	완주군	-	-	
21	608-3	답	581	581	완주군	-	-	
22	608-6	답	1,374	1,374	완주군	-	-	
23	608-9	대	78	78	완주군	-	-	
24	608-10	대	72	72	완주군	-	-	
25	608-11	답	245	245	완주군	-	-	
26	608-14	대	231	231	완주군	-	-	
27	608-15	대	571	571	완주군	-	-	
28	610-16	답	258	19	남조웅	화월리608	변경전 : 610-3	
29	610-5	답	910	910	완주군	-	-	
30	612-1	답	1,278	1,278	완주군	-	-	
31	612-2	답	1,239	1,239	완주군	-	-	

연 번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주 소	소유자의 권리권자	비고
32	612-3	답	1,223	1,144	완주군	-	-	
33	612-4	답	760	760	완주군	-	-	
34	612-15	도	73	28	유기홍	화월리 611	변경전 : 612-5	
35	612-6	답	1,505	1,505	완주군	-	-	
36	612-7	답	793	793	완주군	-	-	
37	613	답	2,483	2,483	완주군	-	-	
38	614	답	1,029	1,029	완주군	-	-	
39	614-2	답	9	9	완주군	-	-	
40	616-3	잡	1,441	1,441	완주군	-	-	
41	903-8	도	200	167	국(건설부)	-	-	
합 계			24,230	22,560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2-16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위반하였기에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9. 30.

익 산 소 방 서 장

- 1. 공고기간: 2022. 9. 30. ~ 2022. 10. 14.
- 2. 공고내용: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가. 납부의무자

- 1) 위 반 자: (유)대*산업개발
- 2) 법인번호: 210114-01*****
- 3)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남천로 ***
- 4) 위반사항: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위반

나. 과 태 료: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다. 납부기한: 2022년 10월 24일

라. 납부방법

- 1) 아래 문의처로 연락 시 고지서 발행 : 고지서납부 ⇒ 납부절차 자동완료
- 2) 전북은행 1013-01-3573963 익산소방서(납부자명으로 입금)
⇒ 입금하고 담당자(☎ 063-839-3244)에게 전화 통화 후 납부가 완료됨
- 3) 위텍스 가입후 납부 가능 <http://www.wetax.go.kr/>
- 4) 지방세입계좌 입금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

마. 이의제기 : 위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서 제출 가능(2022. 12. 14.까지)

바. 미납 시 조치사항: 위반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압류

사. 문의사항: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전북 익산시 무왕로 1338, ☎ 063-839-3244)

기관·단체·상호명

수신 익산소방서장

참조 방호구조과장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익산소방서장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서를 제출 하오니 검토 ·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대한 의견진술자	성명	(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과태료처분 및 의견진술	예고일자	2022. 09. 30.	과태료처분금 액	금2,000,000원
	예고관청	전라북도 익산소방서		
	과태료처분 사유			
	본인 의견			
기 타(관련 자료가 있을 시 기재) * 별지 사용 가능				

2022년 월 일

위 의견 진술자

(인)

익산소방서장 귀하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2-17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를 위반하였기에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9. 30.

익 산 소 방 서 장

1. 공고기간: 2022. 9. 30. ~ 2022. 10. 14.
2. 공고내용: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가. 납부의무자

- 1) 위 반 자: (유)태*개발
- 2) 법인번호: 214914-00*****
- 3)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남천로 ***
- 4) 위반사항: 제조소등 설치자의 용도폐지 신고 위반

나. 과 태 료: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다. 납부기한: 2022년 10월 24일

라. 납부방법

- 1) 아래 문의처로 연락 시 고지서 발행 : 고지서납부 ⇒ 납부절차 자동완료
- 2) 전북은행 1013-01-3573963 익산소방서(납부자명으로 입금)
⇒ 입금하고 담당자(☎ 063-839-3244)에게 전화 통화 후 납부가 완료됨
- 3) 위텍스 가입후 납부 가능 <http://www.wetax.go.kr/>
- 4) 지방세입계좌 입금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

마. 이의제기 : 위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서 제출 가능(2022. 12. 14.까지)

바. 미납 시 조치사항: 위반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압류

사. 문의사항: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전북 익산시 무왕로 1338, ☎ 063-839-3244)

기관·단체·상호명

수신 익산소방서장

참조 방호구조과장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익산소방서장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서를 제출 하오니 검토 ·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대한 의견진술자	성명	(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과태료처분 및 의견진술	예고일자	2022. 09. 30.	과태료처분금 액	금2,000,000원
	예고관청	전라북도 익산소방서		
	과태료처분 사유			
	본인 의견			
기 타(관련 자료가 있을 시 기재) * 별지 사용 가능				

2022년 월 일

위 의견 진술자 (인)

익산소방서장 귀하

전라북도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2-18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위반하였기에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9. 30.

익 산 소 방 서 장

- 1. 공고기간: 2022. 9. 30. ~ 2022. 10. 14.
- 2. 공고내용: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가. 납부의무자

- 1) 위 반 자 : 이*일
- 2) 주민등록번호 : 641203-1*****
- 3)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
- 4) 위반사항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위반

나. 과 태 료: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다. 납부기한: 2022년 10월 24일

라. 납부방법

- 1) 아래 문의처로 연락 시 고지서 발행 : 고지서납부 ⇒ 납부절차 자동완료
- 2) 전북은행 1013-01-3573963 익산소방서(납부자명으로 입금)
⇒ 입금하고 담당자(☎ 063-839-3244)에게 전화 통화 후 납부가 완료됨
- 3) 위텍스 가입후 납부 가능 <http://www.wetax.go.kr/>
- 4) 지방세입계좌 입금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

마. 이의제기 : 위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서 제출 가능(2022. 12. 14.까지)

바. 미납 시 조치사항: 위반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압류

사. 문의사항: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전북 익산시 무왕로 1338, ☎ 063-839-3244)

기관·단체·상호명

수신 익산소방서장

참조 방호구조과장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익산소방서장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서를 제출 하오니 검토 ·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대한 의견진술자	성명	(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과태료처분 및 의견진술	예고일자	2022. 09. 30.	과태료처분금 액	금2,000,000원
	예고관청	전라북도 익산소방서		
	과태료처분 사유			
	본인 의견			
기 타(관련 자료가 있을 시 기재) * 별지 사용 가능				

2022년 월 일

위 의견 진술자

(인)

익산소방서장 귀하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2-19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를 위반하였기에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9. 30.

익 산 소 방 서 장

1. 공고기간: 2022. 9. 30. ~ 2022. 10. 14.
2. 공고내용: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가. 납부의무자

- 1) 위 반 자: 황*일
- 2) 주민등록번호: 650720-1*****
- 3)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안성로 ***
- 4) 위반사항: 제조소등 설치자의 용도폐지 신고 위반

나. 과 태 료: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다. 납부기한: 2022년 10월 24일

라. 납부방법

- 1) 아래 문의처로 연락 시 고지서 발행 : 고지서납부 ⇒ 납부절차 자동완료
- 2) 전북은행 1013-01-3573963 익산소방서(납부자명으로 입금)
⇒ 입금하고 담당자(☎ 063-839-3244)에게 전화 통화 후 납부가 완료됨
- 3) 위텍스 가입후 납부 가능 <http://www.wetax.go.kr/>
- 4) 지방세입계좌 입금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

마. 이의제기 : 위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서 제출 가능(2022. 12. 14.까지)

바. 미납 시 조치사항: 위반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압류.

사. 문의사항: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전북 익산시 무왕로 1338, ☎ 063-839-3244)

기관·단체·상호명

수신 익산소방서장
 참조 방호구조과장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익산소방서장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서를 제출 하오니 검토 ·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자	성명	(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과태료처분 및 의견진술	예고일자	2022. 09. 30.	과태료처분금액	금2,000,000원
	예고관청	전라북도 익산소방서		
	과태료처분 사유			
	본인 의견			
기 타(관련 자료가 있을 시 기재) * 별지 사용 가능				

2022년 월 일

위 의견 진술자 (인)

익산소방서장 귀하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2-20호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자체 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9. 30.

익 산 소 방 서 장

- 공고기간: 2022. 9. 30. ~ 10. 13.(14일간)
- 공고내용: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발부사항 통지(라이프빌딩)

1. 관련근거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2항,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2항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2(조치명령 등의 연기)
 - 라.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21조(공사의 도급)
 - 마.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의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라이프빌딩”에 대하여 자체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어 붙임 1과 같이 조치명령하니 기간 내(2022. 10. 13. ~ 12. 11.) “소방시설업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설치 또는 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를 소방시설업자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관계인이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긴 경우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서식에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라.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의견조정 과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또한, 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839-3246/3267)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 2022 - 종 - 가 - 055호

조치명령서

수령인	성명: 201호 소유자 유한회사익성건설 대표이사 소경호
	주소: 전북 익산시 동서로 532
	전화번호: 010-2614-1122
조치명령 대상	대상: 라이프빌딩
	위치: 전북 익산시 동서로 532
	구분: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조치명령 구분	사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조치할 내용
	※ 불임참조
	방법: 설치 및 보수를 요함
	기간: 2022.10.13. ~ 2022.12.11. (60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익산소방서장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담당자 허지영, 이재원(☎ 839-3246,3267)으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내역

1.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2.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조치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니, 관계인께서는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비명	점검번호	불량내용
소화설비	3-F-005	○ 스프링클러설비 1.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 기능불량 - 지하1층 알람밸브 탬퍼스위치 불량
경보설비	15-E-002	○ 자동화재탐지설비 1. 지구음향장치 기능 불량 -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 소화전 경종 불량 2. 선로 단선 - 2층 감지기 선로단선 - 지하1층 1번 엘리베이터 앞 감지기 선로단선 - 지하2층 5번 소화전 감지기 선로단선 3. 도통 단선 - 지하2층 알람밸브 탬퍼스위치 도통단선 알람밸브 방출확인 도통단선
피난구조설비	21-A-004 21-A-002	○ 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 기능 불량 - 지하2층 하늘문교회 안 피난구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2. 통로유도등 점등불량 - 지하2층 3번 소화전 좌측 통로유도등 미점등(양방향)